



2019

원천세 신고안내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머 리 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과세대상, 관련 규정 및 절차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각 개별세법에 산재되어 있어 원천징수 의무 이행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예탁금·출자금의 금융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등 조세특례 분야 중심의 소폭 개정이 있었습니다.

본 책자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기초로 변경된 법률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고, 작년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더불어 원천징수 업무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및 제도변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천징수 관련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4.

법인납세국장 이 준 오

CONTENTS

제1장 원천징수 개요 / 3

- 1. 원천징수 3
- 2. 원천징수의무자 3
-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4
- 4. 원천징수세율 6
- 5. 원천징수 제외 대상 7
- 6. 원천징수 시기 8
-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9
- 8.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0
- 9.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12
- 10.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원천징수 제도 13
- 11. 국가기관 등의 원천징수 유의사항 16

제2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19

- 1. 원천세 신고·납부 절차 19
- 2. 원천세 신고·납부 방법 20
- 3. 매월 납부 사업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22
- 4. 분납 및 환급신청 28
- 5. 반기별 납부 사업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3
- 6.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41
- 7. 납부서 작성방법 44
- 8. 원천세 전자신고 47

CONTENTS

제3장 지급명세서 제출 / 57

1.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57
2.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58
3.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59
4.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59
5.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60
6.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63
7.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63
8.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64
9.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65
10. 직접작성 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	68
11. 전자신고한 지급명세서 삭제	75
1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Q&A	77

제4장 금융소득 원천징수 / 79

1. 이자소득의 범위	79
2. 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80
3. 배당소득의 범위	81
4. 배당소득 주요 포인트	82
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82
6.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83
7.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84
8. 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85
9.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86

10.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88
 11.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89

제5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 91

1. 근로소득의 범위 91
 2.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93
 3. 일용근로소득 95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96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98
 6.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101
 7.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103
 8.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105
 9.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106
 10. 외화나 물품으로 받은 근로소득 107
 11. 근로소득 수입시기 108
 12.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109
 13.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 110
 14.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111
 15. 근로소득금액 112
 16. 인적공제 113
 17. 연금보험료 공제 117
 18. 특별소득공제 117
 19. 그 밖의 소득공제 122
 20.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130
 21. 세액감면 131
 22.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133

CONTENTS

23.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세액공제	135
24. 월세액 세액공제	142
25. 농어촌특별세	143
26. 편리한 연말정산	144

제6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 152

1. 퇴직급여제도	152
2. 퇴직소득의 범위	153
3. 세법상 퇴직판정	155
4. 퇴직소득 수입시기	156
5.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157
6. 퇴직소득 세액정산	160
7. 퇴직소득세의 이연	160
8.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162
9. 임원 퇴직소득금액	164

제7장 연금소득 원천징수 / 167

1. 연금소득의 범위	167
2. 비과세 연금소득	171
3.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171
4.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172
5.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174

제8장 : 사업소득 원천징수 / 177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177
2. 원천징수의무자	181
3.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181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82
5. 사업소득 연말정산	182

제9장 : 기타소득 원천징수 / 187

1. 기타소득의 종류	187
2. 비과세 기타소득	189
3.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190
4.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방법	190
5.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91
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192
7. 원천징수세율	194
8.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94
9.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95

제10장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 198

1. 종교인소득	198
2. 종교관련종사자	200

CONTENTS

- 3. 종교단체 200
- 4. 종교인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201
- 5.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202
- 6.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204
- 7.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204
- 8.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208
- 9.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210

제11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 214

- 1. 비거주자 214
- 2. 과세대상소득 215
- 3. 원천징수의무자 218
- 4.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219
- 5. 원천징수시기 220
- 6. 과세표준 계산방법 220
- 7. 원천징수세율 222
- 8.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224
- 9.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225

부록 2019년 원천세 관련 개정세법 / 226

원천징수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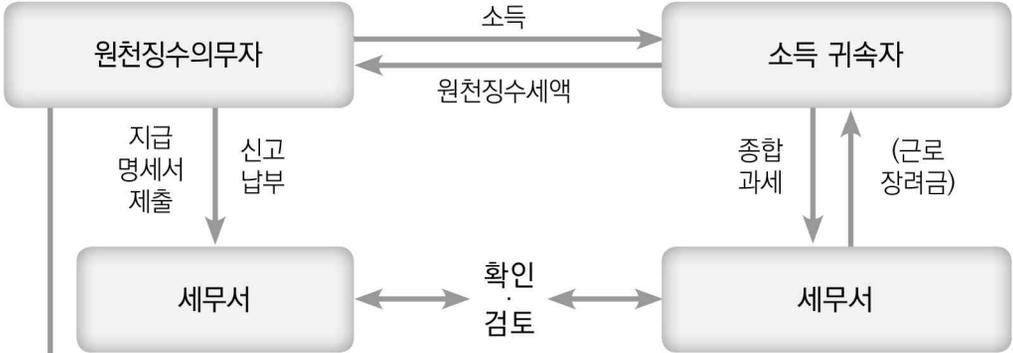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10. 반기별 납부신고 (7~12월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말정산					7.10. 반기별 납부신고 (1~6월분)						1.10. 반기별 납부신고
	2월말	3.10.		~5.31.	~6.30.	~7.31.					~12.31.	~1.31.
연금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자·배당· 기타·연금) *종교인소득 제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퇴직· 사업·종교인 소득*)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반기별 납부 신청기간	반기별 납부 승인통보					반기별 납부 신청기간	반기별 납부 승인통보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주요 일정 요약〉

-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함
 다만,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달 10일(7월10일, 1월10일)까지 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함(연2회)
 ※ (반기납부 신청)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신청(신청시기 : 6월, 12월)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7월 31일, 1월 31일)까지 승인통보함
- 연말정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해 실제로 부담할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당해 급여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함(추가납부세액 10만원 초과시 3개월간 분납 가능)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2월말(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 일용근로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제출(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소득 이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누락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함

원천징수 제도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원천징수의무**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지급일의 다음연도 2월말(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불성실 신고·납부 등에 따른 불이익**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3~10%를 가산세로 부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0.5%*)를 가산세로 부담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1 >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

구 분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
납세의무자		소득자	소득자
세금 납부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세금 납부 절차	세액계산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신고서 제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납부시기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분납 효과)	신고 시기에 납부(일시 납부)

2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사 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이자 지급 시 법인세(법인의 소득이므로 법인세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나. 농어촌특별세

○ 납부 대상

-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구 분	대 상 소 득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과세표준	세 액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 ×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 × 20%

○ 신고·납부방법

-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납부)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구 분	납 세 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세액의 10%
--

○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¹⁾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begin{aligned} \text{법인(소득)세} &= \text{과세표준(지급액)} \times \text{제한세율} \times 10/11 \\ \text{지방소득세} &= \text{과세표준(지급액)} \times \text{제한세율} \times 1/11 \end{aligned}$

○ 납부방법

-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1)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이란 등을 제외한 국가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 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이용
그 외 지방자치단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

4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 및 내국법인

과세표준		구 분	세 액	
개인	이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밖의 이자소득	14%	
	배 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밖의 배당소득	14%	
	사 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봉사료 5%
	근 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연 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	
		퇴직연금·사적연금	3~5%, 4%	
기 타	복권당첨금	20%	3억원초과 30%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분 종교인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20%	봉사료 5%	
퇴 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법인	이 자 소 득	이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그 외	14%	
	배 당	투자신탁의 이익	14%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구 분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19조)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3조)
이자소득	20(채권이자 : 14)	20(채권이자 : 14)
배당소득	20	20
부동산소득	-	-
선박등임대소득	2	2
사업소득	2	2
사용료소득	20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기타소득	20	20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
연금소득	거주자와 동일	-
인적용역소득	20	20
퇴직소득	거주자와 동일	
양도소득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5 원천징수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155조)
 -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경우(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 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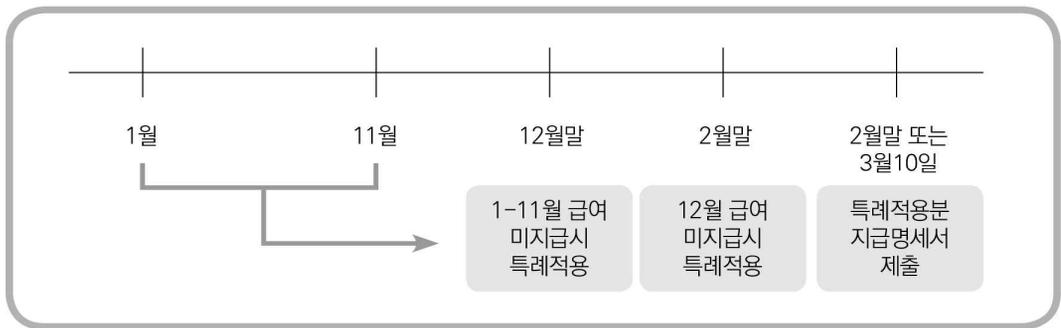
구 분	검 토 내 용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 소액부징수

-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6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함
-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구 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이자·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퇴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근로·퇴직소득

대 상	교 부 시 기
교 부 시 기	계속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 ※ 다만, 종원 근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자의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교부
	중도 퇴직자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일용 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퇴직소득	그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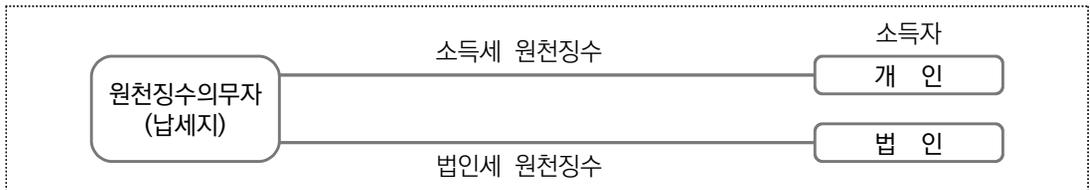
○ 그 외의 소득

소득구분		교 부 시 기
이자소득 · 배당소득		지급하는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제외 소득	지급하는 때
연금소득	국민연금 · 직역연금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퇴직연금 · 사적연금	지급하는 때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교인 소득 외	지급하는 때

8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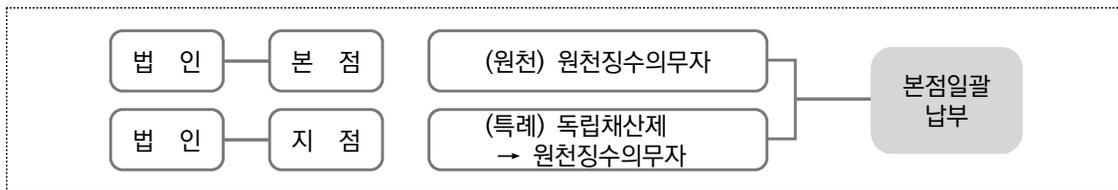
가. 일반적인 경우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 ·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① 거주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②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③ 법인	일반	㉑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㉒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 외국법인은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㉓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 납부신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지점 ·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나. 본점 일괄납부 특례



○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 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신청 가능

▶ (신고 및 납부방법) 본점일괄납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 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 신고·납부

▶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만,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함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한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9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가산세 적용대상

-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사 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 가산세의 계산

$$\text{미납세액} \times 3\% + (\text{과소} \cdot \text{무납부세액} \times 2.5/10,000^* \times \text{경과일수}) \leq 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구 분	가 산 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 계산방법은 국세와 동일

※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10 ▶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 대상소득 지급 ⇨ 원천징수 ⇨ 신고·납부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시 신고·납부 방법

- ▶ (신고)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납부 또는 환급세액 없는 경우 포함)
- ▶ (납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에 납부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및 제출

-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구 분	제 출 기 한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활용

- ▶ 원천징수 신고의 근거가 되는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근로장려금 지급,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책정, 금융회사 대출심사 등 여러 분야에 이용함
- ▶ 이를 제출 누락하거나 착오 제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정확히 제출하도록 유의

○ 원천징수 누락 시 문제점

- ▶ 원천징수대상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누락하게 되면 소득자로부터 세액을 다시 징수하기 어렵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게 되어 관련 가산세도 추징당함
-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과소·무납부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5/10,000 × 경과일수) ≤ 10%)를 부담
-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소득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를 가산세로 부담

○ 편리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 제출과 동시에 오류 검증이 가능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이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을 이용하면 지급명세서 작성 관련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소요시간과 비용 절약 가능

○ 반기별납부제도

- ▶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반기별납부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20인 이하*인 경우, 신청에 의해 반기별 신고·납부 가능

*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과 관계 없이 반기별납부 신청 가능

- ▶ 상반기(6.1~6.30), 하반기(12.1~12.31.) 신청 가능

전 자	서 면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 반기별납부를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신규 사업자의 원천징수 관련 주요 오류 유형

1. 원천징수 누락 및 무납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무납부하는 경우 →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기한후 신고·납부
2.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는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작성·교부
3. 소득 귀속연월, 지급연월 등을 잘못 구분하여 신고·납부
당월에 2회 이상 급여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시마다 신고·납부한 경우 → 월1회 신고·납부
* 급여를 4.5.에 지급하고, 상여금을 4.10.에 지급한 경우 한번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급여 지급시 마다 귀속 연월과 지급연월을 달리 신고·납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신고 방법을 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한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기한후 신고,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5.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 등 소득구분 오류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상시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

11 > 국가기관 등의 원천징수 유의사항

- 국가, 지자체 등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본부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부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사 례

A학교 교직원 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강사료는 학교에서 지급한 경우, 교육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 신고·납부 및 교육청 명의로 지급명세서 제출

구 분	교직원 급여	강사료	원천징수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A학교	-	기타소득 원천징수	A학교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을 포함하여 교육청에서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교육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사 례

'19년 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19년 5월말에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두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

구 분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연월
4월 급여	매월	'19년 4월	'19년 5월	'19년 6월
5월 급여	매월	'19년 5월	'19년 5월	'19년 6월

- 귀속연월이 같은 소득을 같은 달에 2회 이상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한 장만 작성, 제출

사 례

'19년 3월 급여를 4월10일과 4월25일에 각각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작성

구 분	지 급 일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연월
3월 급여	4/10, 4/25	매월	'19년 3월	'19년 4월	'19년 5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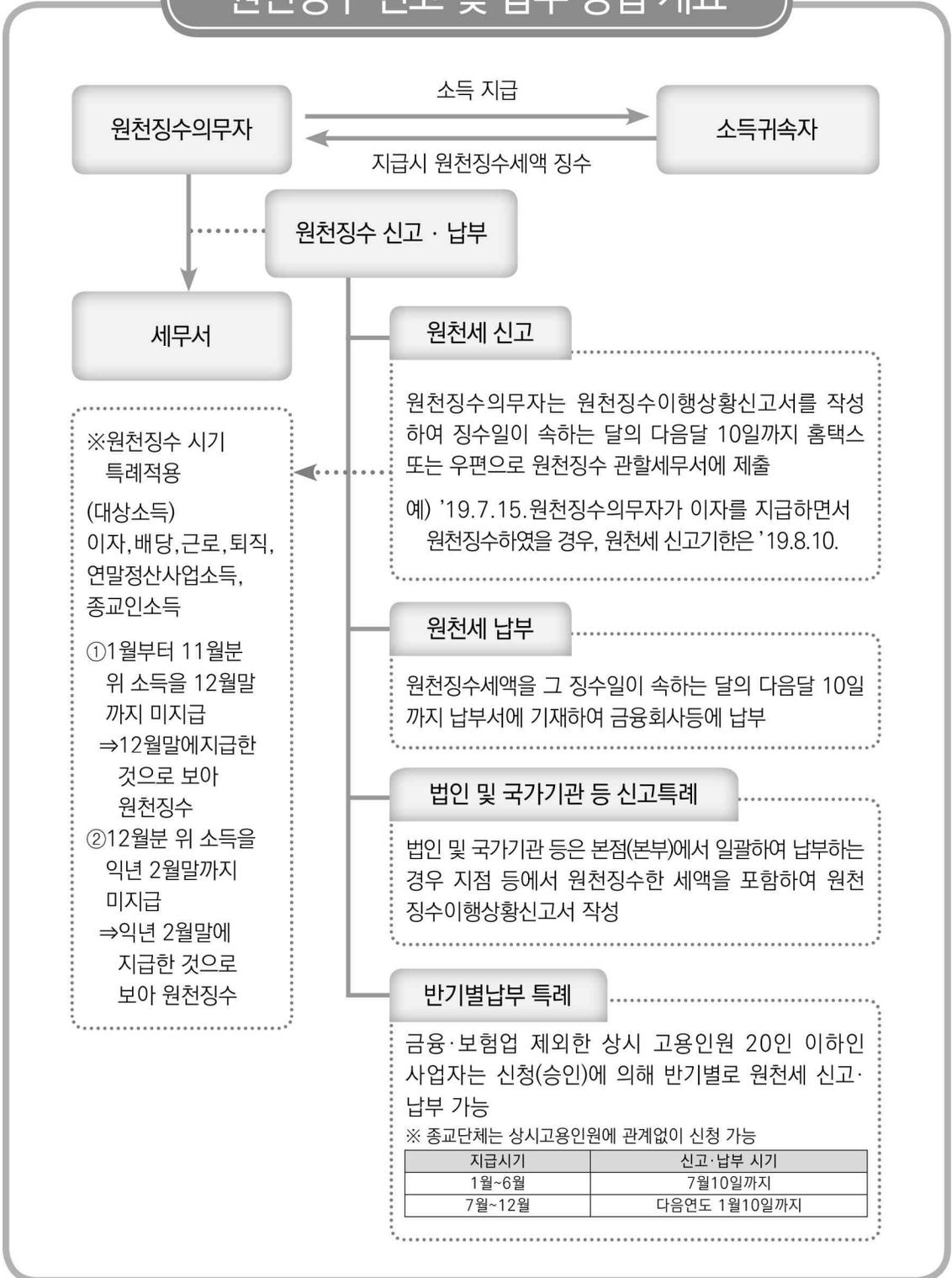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근로소득자에게 징수하여 납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원천징수 신고 관련 주요 오류 유형

-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징수세액만 납부
→ 해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 ② 귀속연월, 지급연월 등을 잘못 구분하여 신고·납부
당월 2회 이상 급여 지급하면서 지급시마다 따로 신고·납부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합산하여 신고·납부
-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누락
→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제출
- ④ 중도퇴사자에 대한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제출기한(다음연도 3월10일)까지 계속 근로자분과 함께 제출
- ⑤ 계약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정식 근로자와 함께 제출
- ⑥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작성·제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방법 개요



제2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세 신고 · 납부 절차

○ 원천세 신고 · 납부

-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우편제출 시 10일자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대상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하여 제출

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납세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자
개인	개 인		주된 사업장(주소지) 소재지	개 인
법인	일반법인	본 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본점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점	지점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점
		(본점일괄납부신청) 해당 지점	본점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본점
	사업자단위등록	본 점	본점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본점

※ 국가 및 법인의 경우 본점(본부)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 (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에 납부

2 원천세 신고 · 납부 방법

원천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또는 수동신고 방법이 있으나,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 납부하는 방법이 납세자에게 편리

○ 관련 서식 찾기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내려받기를 통해 사용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서식 이름]에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검색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구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본표 : 1쪽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 4쪽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 7쪽
- 기납부세액 명세서 : 8쪽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9쪽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 10쪽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 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신고
- ▶ 신고방식은 [신고서작성방식]과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파일변환신고 방식]으로 구분
- ▶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공인인증서 필수)

- ▶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가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전자납부 가능
- ▶ 홈택스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소유시 이용 가능
- ▶ 이용시간 : 365일 07 : 00~23 : 30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조회납부

■ 세금납부 유형 ■

구 분	내 용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였거나 고지받은 세금을 납부
자진 납부	신고한 세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납부
타인세금 납부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안내
인지세 전자문서 납부	전자문서 계약에 대한 인지세 전자문서 납부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원천세, 법인세)의 전자신고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신고·납부. 단,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국세기본법 제46조의2)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

- ▶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신용카드로 국세납부
- ▶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통해 납부

3 매월 납부 사업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9년 7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부)	
	사업자(주인)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부)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자·비거주자)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	20,000,000	9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2	2,000,000	0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7	22,000,000	900,000		900,000			
	퇴직 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1	25,000,000	500,000				
	가감계	A20	1	25,000,000	500,000		500,00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 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2	1,000,000	200,000					
가감계	A40	2	1,000,000	200,000		200,000				
연금 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0	48,000,000	1,600,000		1,600,000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⑬ 조정대상 환급세액 (⑩+⑮+⑰)	⑰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⑱ 차월이월 환급세액 (⑬-⑰)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 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가. 기본사항 작성방법

○ 「① 신고구분」

①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 ▶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 신고서는 “수정”에,
- ▶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를 함
※ 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소득처분”에 “○”표시할 수 없음
- ▶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 표시
- ▶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란에 “○” 표시하고 「㉑환급신청액」 기재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

○ 「② 귀속연월」

② 귀속연월	년 월
--------	-----

소득발생 연월을 기재. 소득처분의 경우 귀속연월은 대상 소득에 대한 당초 연말정산 귀속연월(2018년 귀속 → 2019년 2월)을 기재

※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1월 또는 7월)을 기재

-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분에 대해 작성 제출

○ 「③ 지급연월」

③ 지급연월	년 월
--------	-----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월을 기재
※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6월, 12월)을 기재

나. 원천징수명세의 소득지급

○ 「④ 인원」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④ 인원」 란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원수를 기재

○ 「⑤ 총지급액」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⑤ 총지급액」 란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

※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기재시 유의사항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는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하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1항 2호의2, 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는 인원은 제외함

▶ 비과세 근로소득의 기재 여부 검토표

법 조 문	비과세 항목	기재여부
소법 §12 3 가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 §12 3 나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 §12 3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 §12 3 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 §12 3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 §12 3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법 §12 3 사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 §12 3 아	비과세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11)	○
소법 §12 3 자	소득세법시행령 §12 1(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는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시행령 §12 2~3(일직료·숙직료 등)	×
	소득세법시행령 §12 3(자가운전보조금)	×
	소득세법시행령 §12 4, 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소득세법시행령 §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소득세법시행령 §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법 조 문	비과세 항목	기재여부
소법 §12 3 자	소득세법시행령 §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소득세법시행령 §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소득세법시행령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소득세법시행령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소득세법시행령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소득세법시행령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 인건비)	○
	소득세법시행령 §12 14 (취재수당)	○
	소득세법시행령 §12 15 (벽지수당)	○
	소득세법시행령 §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12 17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소득세법시행령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법 §12 3 차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법 §12 3 카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법 §12 3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법 §12 3 파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법 §12 3 하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법 §12 3 거	소득세법시행령 §16①1(국외 근로 보수) 100만원	○
	소득세법시행령 §16①1(국외 근로 보수) 300만원	○
	소득세법시행령 §16①2(국외근로)	○
소법 §12 3 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법 §12 3 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법 §12 3 러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현물 급식	×
소법 §12 3 머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 §12 3 버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법 §12 3 서	교육기본법 §28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법 §12 3 어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소법 §12 3 자	소득세법시행령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구 조특법 §15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16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⑥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75%,100%)	○
조특법 §18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 §3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100%, 50%, 70%, 90%)	○
조세조약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 교수)	○

▶ 인원 및 총지급액의 합계는 총합계(A99)란의 「④인원」, 「⑤총지급액」란에 기재

다. 원천징수명세의 징수세액

- 징수세액(⑥ ~ ⑧)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로 구성
 -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별로 해당되는 코드에 맞추어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구분 기재
 - ▶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환급세액 앞에 “△” 표시하여 기재
- 「⑧ 가산세」는 원천징수 대상 세액을 과소납부하거나 지연납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A99)의 ⑥ ~ ⑧에 구분 기재
 - ▶ “△” 표시된 세액은 총합계(A99)의 ⑥~⑪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합계액은 [2. 환급세액조정,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⑮일반환급]란에 기재

라. 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⑮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 . . .]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작성
 - *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은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과 상계내역을 기재
 -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⑮ 조정대상환급세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⑮ 조정 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재하지 아니함

마. 코드별 해설

- 근로소득 개별 항목

항목 및 코드	내 용
간이세액(A01)	매월 급여 지급액 및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
중도퇴직(A02)	연도 중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
일용근로(A0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및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
연말정산(A04)	연도말까지 계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한 내역을 기재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항목 ■

소득자	소득구분	기재항목
비거주자 (개인)	이자소득	신고서 부표 C61란에 기재하고 본표 A50란에 기재
	배당소득	신고서 부표 C62란에 기재하고 본표 A60란에 기재
	선박 등 임대·사업소득	신고서 부표 C63란에 기재하고 본표 A25란에 기재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부표 C64란에 기재하고 본표 A25란에 기재
	사용료소득	신고서 부표 C65란에 기재하고 본표 A25란에 기재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서 부표 C66란에 기재하고 본표 A70란에 기재
	부동산 등 양도소득	신고서 부표 C67란에 기재하고 본표 A70란에 기재
	기타소득	신고서 부표 C68란에 기재하고 본표 A40란에 기재
외국법인	이자소득	신고서 부표 C81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배당소득	신고서 부표 C82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선박 등 임대·사업소득	신고서 부표 C83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부표 C84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사용료소득	신고서 부표 C85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서 부표 C86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부동산 등 양도소득	신고서 부표 C87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기타소득	신고서 부표 C88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

- ▶ 개인(거주자·비거주자) 소득구분 중 2013년 신설된 퇴직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의 연금계좌(A21, A41, A48) 항목은 연금계좌(DC형, IRP, 연금저축)사업자인 금융회사만 작성

4 분납 및 환급신청

가.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
 - ▶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비율 적용
- 원천징수세액 적용방법
 - ▶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신청한 경우 조정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

나.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 분납대상
 - ▶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년 2월~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 ※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

사 례

- 2014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납부기한(기획재정부 소득세과-255, 2016.06.22.)
 -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5년 3월분~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5월분 급여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 7월 10일에 납부함

○ 분납방법

- ▶ 근로자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을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소득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무처 명칭	(주)국세	사업자등록번호	123-45-12345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 KR)
근무기간	2019.1.1~2019.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분납 신청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 보관.
- ▶ 다만, 분납 신청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 퇴사(전출)하는 경우 퇴사(전출)시 분납금액 전액을 원천징수

(분납 관련 신고서 작성사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		납 부			비 고
	① 총 지급액	② 소득세	③ 3월10일	④ 4월10일	⑤ 5월10일	
합 계	330,000,000	△200,000	△800,000	300,000	300,000	
김○○	100,000,000	600,000	200,000	200,000	200,000	분납신청 ○
이○○	80,000,000	△600,000	△600,000			
박○○	70,0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분납신청 ○
최○○	50,000,000	△300,000	△300,000			
정○○	30,000,000	△200,000	△200,000			

○ 월별 근로소득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급여 지급	인 원	총 지급액	원천징수 소득세	비고
2월	5	80,000,000	600,000 ⑥	3.10. 신고
3월	5	50,000,000	500,000	4.10. 신고
4월	5	40,000,000	400,000	5.10. 신고

⇒ 3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 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 조 환 급 세 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 산 세 포 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간이세액	A01	5	80,000,000	600,000	⑥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①	②					
연말 정산	합 계	A04	5	330,000,000	△200,000				
	분납금액	A05	2		600,000	④+⑤			
	납부금액	A06			△800,000	③			
가 감 계	A10	10	410,000,000	△200,000	③+⑥				

* 연말정산 결과는 A04 란에 기재. '소득세 등' A04 = A05 + A06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A02+A03+A04), 소득세 등(A01+A02+A03+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4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 조 환 급 세 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 산 세 포 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	50,000,000	5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 계	A04			300,000				
		분납금액	A05							
		납부금액	A06			300,000	④			
	가 감 계	A10	5	50,000,000	800,000	A01(500,000) + A06(300,000)				

- * 분납금액을 납부할 때는 A04, A06의 '소득세 등'에 분납금액을 동일하게 기재
다만, A04의 인원, 총지급액과 A05의 인원, 소득세등은 기재하지 않음
-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A02+A03), 소득세 등(A01+A02+A03+A06)

⇒ 5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 조 환 급 세 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 산 세 포 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	40,000,000	4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 계	A04			300,000				
		분납금액	A05							
		납부금액	A06			300,000	⑤			
	가 감 계	A10	5	40,000,000	700,000	A01(400,000) + A06(300,000)				

- * 분납금액을 납부할 때는 A04, A06의 '소득세 등'에 분납금액을 동일하게 기재
다만, A04의 인원, 총지급액과 A05의 인원, 소득세등은 기재하지 않음.
-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A02+A03), 소득세 등(A01+A02+A03+A06)

다. 조정환급

○ 개념

- ▶ 원천징수 세액 중 다른 세목간에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환급할 세액과 상계하여 차감후 세액을 납부
- ▶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사 례

○ (조정환급)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100만원이고, 기타소득세 1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세 △100만원(②환급세액 조정란의 ⑮일반환급에 기재)으로 기타소득세 10만원 (⑰당월조정환급세액에 기재)을 조정환급하고 남은 근로소득세 90만원에 대해 ⑳차월이월환급세액 또는 ㉑환급신청액에 기재함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자·비거주자)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0	12,000,000	45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10	144,000,000	△1,45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1,450,000			
가감계	A10	20	156,000,000	△1,000,000					
기타 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1	500,000	100,000				
	가감계	A40	1	500,000	100,000		100,000		
총합계	A99	21	156,500,000	2,000,000		100,000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 +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 세액	⑭ 차감 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1,000,000			1,000,000	100,000	900,000	

라. 환급신청

○ 환급신청 요건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㉔차월이월 환급세액 란의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 ▶ 원천징수의무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분에서 조정환급 방법과 환급신청 방법 중 선택 가능

○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5 ▶ 반기별 납부 사업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가.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 원천세 신고·납부 구분

구 분	내 용						
매월 납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인세)를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급여 등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매월 신고·납부						
반기별 납부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가능 ※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시기</th> <th style="text-align: center;">신고 납부시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월부터 6월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7월 10일까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월부터 12월까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다음연도 1월 10일까지</td> </tr> </tbody> </table>	지급시기	신고 납부시기	1월부터 6월까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지급시기	신고 납부시기						
1월부터 6월까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승인)요건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요건	종업원수	직전과제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 인원의 평균인원수 20인 이하 *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 요건 없음
	제외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1일~6월 30일(승인시 7월~12월 급여 지급분을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12월 1일~12월 31일(승인시 다음연도 1월~6월 급여 지급분을 다음연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신청 방법	전자신청	홈택스에 의한 승인 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세무서식]에서 서식 내려받기 가능

○ 반기별 납부 포기

- ▶ 반기별 납부 사업자가 매월 신고·납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포기신청 가능
(이용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의 인터넷 신청을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매월 납부로 전환시 원천세 신고방법

- ▶ 반기 시작(개시)월부터 매월 납부로 전환되기 전월(포기월)까지 지급한 금액 및 원천징수 내역을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작성하여 포기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사 례

2019. 10월에 반기별 납부를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19.11.10.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9년 7월),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9년 10월)을 기재

나.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 반기 근로소득 지급(5명, 총지급액 30백만원, 소득세 900,000원)
- 반기 중 중도퇴사자 연말정산(1명, 총지급액 10백만원, 소득세 △100,000원)
- 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12명, 총지급액 6백만원)
- 반기 기타소득 지급(2명, 총지급액 1백만원, 소득세 40,000원)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2019년 7월					
								③ 지급연월						
								2019년12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사업자(주인) 등록번호		xxx-xx-xxxxx		사 업 장 소 재 지		○○○○○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전환번호					
									xxx-xxx-xxxx					
								00@00.00						
								전자우편주소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자·비거주자)	근로 소득	연말 정산	간이세액	A01	5	30,000,000	900,000							
			중도퇴사	A02	1	10,000,000	△100,000							
			일용근로	A03	12	6,000,000	0							
			합 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 감 계	A10	18	46,000,000	800,000				800,000					
	퇴직 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 감 계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 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 득	매월징수 연말정산	A43									
			A44											
			그 외	A42	2	1,000,000	40,000							
			가 감 계	A40	2	1,000,000	40,000			40,000				
	연금 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 감 계			A47											
법인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자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20	47,000,000	840,000				840,000				

○ 인원 및 지급액

구분항목	인원 작성 방법	지급액 작성 방법
간이세액(A01)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 기재	반기 동안 지급액 합계액 기재
중도퇴사(A02)	반기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	
사업소득(A25) 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 기재	
퇴직소득(A20)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기재	

○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

구 분	귀 속 월	지 급 월	제출일자
상 반 기	2019년 1월	2019년 6월	2019년 7월
하 반 기	2019년 7월	2019년 12월	2020년 1월

○ 연말정산 환급할 세액 [A04(연말정산) ⑥ 소득세가 “△”인 경우] 신고 방법

▶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

방 법	내 용
환급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2월 지급분을 포함하여 3.10.까지 환급 신청 ※ 환급신청 가능액 = ㉓ - ㉔ ㉓ 연말정산 환급할 세액 ㉔ 1월 및 2월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 7월 10일까지 반기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3월 환급 신청시 이미 신고한 1월~2월분을 제외하고 신고·납부 * ㉔ ≥ ㉓ 경우에는 7월 10일 신고시 조정환급(환급신청 불가)
조정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0일까지 반기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환급세액은 「1~6월 사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 (3월에 환급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연말정산 사례

○ (주)플림상사(원천세 반기별 납부)의 원천징수세액('19.1월~'19.6월)

귀속연월	지급연월	원천징수세액	환급세액	조정	납부할세액
2019. 1월	2019.1월	1,500			1,500
2019. 2월	2019.2월	2,000			3,500
2018 귀속 연말정산	2019.2월	농특세 500	7,000	(500)	△3,000
2019. 3월	2019.3월	1,200			△1,800
2019. 4월	2019.4월	1,000			△800
2019. 5월	2019.5월	2,000			1,200
2019. 6월	2019.6월	2,000			3,200
합 계		10,200	7,000	(500)	3,200

▶ '19. 1월~2월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 3,500원

▶ '18년 귀속 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액 : 소득세 △7,000원*, 농특세 500원

* 소득세 △7,000원 = 납부할 세액 2,500원 + 환급할 세액 9,500원

○ 연말정산 분 환급신청하는 경우

▶ 환급 신청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3.10일 제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9년 2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0	50,000	3,5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 계	A04	10	220,000	△7,000	5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7,000	500				
가감계	A10	20	270,000	△3,500	500	500	0	0		
총합계	A99	20	270,000		500	500	0	0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14+15+16+17)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18-19)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 세액	⑭ 차감 잔액 (12-13)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3,500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3,500	500	3,000	3,000

- ▶ 신고구분 : 반기, 연말, 환급신청 표시
- ▶ 귀속연월 : 반기납 신고의 경우 귀속월은 2019년 1월로 작성
- ▶ 지급연월 : 환급신청의 경우 2019년 2월로 작성
- ▶ 간이세액(A01) : '19.1월~2월 지급한 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 기재(1,500+2,000)
- ▶ 연말정산(A04) : '18년 귀속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원천징수 내역 기재
- ▶ 근로소득 가감계(A10) : 근로소득(A01 ~ A04) 가감한 세액을 기재하며 다음의 작성 방법에 유의

구 분	올바른 방법	잘못된 방법
⑥ 소득세 등 (납부(환급) 금액)	• 가감한 금액 납부(환급) 간이세액과 연말정산세액을 가감 납부세액은 없고 3,500원 환급	• 코드별로 납부(환급) 간이세액(A01) 3,500원 납부 연말정산(A04) 7,000원 환급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타세목간 조정환급한 세액 기재 농어촌특별세 500원과 조정환급한 금액만 기재	동일세목의 가감한 금액을 기재

▶ [2. 환급세액 조정] 작성방법

구 분	작 성 방 법	금 액
⑮ 일반환급	A10, A20, A30, A47.....A90의 ⑥소득세 등 란의 △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	3,500
⑮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차감잔액 + ⑮ 일반환급 + ⑮ 신택재산 + ⑮ 기타	3,500
⑮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총합계(A99)의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기재	500
⑮ 차월이월 환급세액	⑮ 조정대상 환급세액 - ⑮ 당월조정환급세액계	3,000
⑮ 환급신청액	⑮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내에서 신청 ※ 환급신청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3,000

○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7.10일 제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0	90,000	6,2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 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10	90,000	6,200			6,200		
총합계	A99	10	90,000	6,200			6,200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⑱+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 세액	⑭ 차감 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택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3,000	3,000	0								

- ▶ 귀속연월 : 귀속월은 2019년 1월(19.1월 ~ 2월분을 환급신청 시 포함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반기별 신고의 귀속연월은 1월임)
- ▶ 지급연월 : 지급월은 2019년 6월
- ▶ 간이세액(A01) : '19년 3월 ~ 6월 지급한 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 기재 (3월에 이미 신고한 1월 ~ 2월 지급 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은 제외)
- ▶ ⑫전월 미환급세액은 3월 환급신청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⑳차월이월환급세액의 금액을 기재
- ▶ ⑬기환급 신청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한 세액(3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㉑ 환급신청액)을 기재

○ 연말정산 분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19.7.10일 제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1월
매월	<input checked="" type="radio"/> 반기	<input type="radio"/> 수정	<input checked="" type="radio"/>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9년 6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0	140,000	9,7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 계	A04	10	220,000	△7,000	5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7,000	500			
	가감계	A10	20	360,000	2,700	500		2,700	500	
총합계	A99	20	360,000	2,700	500		2,700	500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⑮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⑰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⑱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⑰)	⑲ 환 금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 세액	⑭ 차감 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⑰ 금융 회사 등	⑰ 합병 등				

- ▶ 귀속연월 : 귀속월은 2019년 1월
- ▶ 지급연월 : 지급월은 2019년 6월
- ▶ 간이세액(A01) : 1월 ~ 6월 지급한 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 기재
- ▶ 연말정산(A04) : '18년 귀속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원천징수 내역 기재

6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 수정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

나. 경정 등의 청구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내용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 ▶ 법정신고기한(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 경정청구 대상 검토

구 분	내 용
소득 종류	연말정산(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
세액 납부	소득세, 법인세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기한 내 제출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당해 소득자가 경정청구 가능

○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

-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

○ 근로소득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구 분	원천징수의무자	근 로 자
제출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 ②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수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④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시 당초분,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⑤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 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당초분, 수정분) ③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시 당초분,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④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제 출 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작성 사례

'19.08월분 급여를 2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1명,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함

■ 당초 원천징수 현황 및 수정 내용 ■

구 분	소득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일	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당 초 '19.08월분	근로(A01)	2019.08	2019.08	2019.9.10	1	3,000,000	58,730
	(수정할 내용) 8월에 입사한 직원 1명에 대한 급여 3백만원 및 원천징수세액을 누락하였음을 10월에 확인하여 11월 10일까지 수정신고						
수 정 '19.08월분	근로(A01)	2019.08	2019.08	2019.11.10	2	5,000,000	108,730
	(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text{미납세액} \times 3\% + (\text{미납세액} \times 2.5/10,000 \times \text{경과일수}) \leq \text{미납세액} \times 10\%$						
'19.10월분	근로(A01)	2019.10	2019.10	2019.11.10	2	6,000,000	117,460

○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①신고구분 수정 란에 “○” 표시
-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과 동일하게 기재
-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과 [2. 환급세액 조정]을 새로 작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란을 반으로 나누어 상단에 붉은 색으로 옮겨 기재
- 하단에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검정색으로 기재

※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 증가 및 감소분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정기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함(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는 기재하지 않음에 유의)

○ 당초 신고('19.8월 귀속 → '19.9.10 제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9년 8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	3,000,000	58,730				
	연말 정산	합 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1	3,000,000	58,730			58,73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3,000,000	58,730				58,730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 금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 세액	⑭ 차감 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택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 수정신고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9.8월 귀속분 수정 → '19.11.10. 제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9년 8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	3,000,000	58,730				
		2	5,000,000	108,730		2,260			
	가감계	A10	1	3,000,000	58,730			58,730	
		2	5,000,000	108,730		2,260		110,99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3,000,000	58,730				58,730	
		2	5,000,000	108,730		2,260		110,990	

▶ 정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9.10월 귀속 → '19.11.10 제출)

①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10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9년 10월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	6,000,000	117,460					
	가감계	A10	2	6,000,000	117,460			117,460		
	수정신고(세액)	A90			50,000		2,260	52,260		
	총합계	A99	2	6,000,000	167,460		2,260	169,720		

* (참고) 수정신고(세액) A90 기재금액 계산과정 해설

구 분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등	농특세	가산세	당월조정	소득세 등	농특세
① 당초분	1	3,000,000	58,730		-		58,730	
② 수정분	2	5,000,000	108,730		2,260		110,990	
A90 기재내역	차이(②-①)		50,000		2,260		52,260	

7 ▶ 납부서 작성방법

가. 소득세 영수증서(납세자용) 작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0,000,000	3,200,000					
	연말 정산	합 계	A04	20	480,000,000	15,000,000	20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15,000,000	200,000			
		가감계	A10	40	520,000,000	18,200,000	200,000		18,200,000	200,000

○ 영수증서(납세자용)

(전자)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211	1907	4	14	강남	180616		
상호(성명)	(주)국세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11-81-11111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길			전화		회계연도	2019년	

귀속연도/기분	2019년 귀속 6월 분											
세 목 명	납 부 금 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근로소득세					1	8	2	0	0	0	0	0
농어촌특별세							2	0	0	0	0	0
계					1	8	4	0	0	0	0	0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19년 7월 10일

년 월 일
 은행 지점
 우체국



- ▶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 ▶ 서 코 드 : 관할세무서 3자리
- ▶ 납부연월 : [사례 2019년 7월 ⇒ 1907], 2019년 6월 귀속
- ▶ 납부구분

1	확정분 자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3	예정신고·중간예납 : (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4	원천분 자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법인)세 원천분

○ 세목별 코드

종합소득세	10	이자소득세	11	배당소득세	12	사업소득세	13
근로소득세	14	기타소득세	16	연금소득세	17	퇴직소득세	21
양도소득세	22	법 인 세	31	상 속 세	32	증 여 세	33
부가가치세	41	특별소비세	42	주 세	43	인 지 세	46
교 통 세	53	농어촌특별세	55	종합부동산세	57	과 징 금*	90

* '93.8.12.이전에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93.8.12. 금융실명제 시행일 현재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

○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 세무서명과 세무서 계좌번호

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 통지서 작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20	40,000,000	3,200,000					
	연말 정산	합 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20	40,000,000	3,200,000			3,200,000		
	퇴직소득	A20	3	100,000,000	1,500,000			1,500,00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

구분		인원	과세표준액	지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20	3,200,000	320,000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3	1,500,000	150,000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비거주자 양도소득				
법인원천	내국법인			
	외국법인			
가감세액(조정액)				
가산세				
계		23	4,700,000	470,000

8 원천세 전자신고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홈택스 제출

○ 세금신고

- ▶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음
- ▶ (신고방법) 작성프로그램에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작성방식]과 회계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을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검증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 [변환방식]이 있음
 - ※ 폐업신고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작성방식]에 의해 원천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 ▶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7 사용자인데 전자신고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로그인시 관리자로 로그인하거나 익스플로러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눌러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해야 프로그램이 설치됨

○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기간

정기분 신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제출월(기한후신고는 지급월)의 다음달 25일부터 신고 가능
이용시간	신고기간 중 06:00 ~ 24:00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원천세 세금신고 유의사항

- ▶ 동일 귀속, 지급연월의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번 전송한 경우
정기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 신고는 신고 당일이 지나기 전 최종 전송한 자료를 신고한 것으로 봄
- ▶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신고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 수정, 기한후 신고의 경우 제출일의 이틀 이내에 제출 가능

나. 원천세 홈택스 신고 이용안내

- 직접작성 방식과 변환방식 중 선택하여 신고
- 직접 작성 방식
 - 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화면의 [정기신고 작성(또는 기한후 신고 작성, 수정신고 작성)] 클릭 → ② 신고서 입력 → ③ 오류검증 → ④ 전송 → ⑤ 접수증 확인 → ⑥ [STEP2. 신고내역]으로 이동하여 신고서(납부서) 출력
- 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파일 변환방식
 - 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화면의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클릭
 - ② 상단 변환대상파일 선택의 [찾아보기] 클릭 후, 회계프로그램 생성파일 선택 후 [열기] 클릭
 - ③ 파일처리내역에 파일이름 등의 정보가 떴을 때 하단의 [파일형식검증하기] 클릭 후 [검증결과확인] 클릭
 - ④ 파일형식검증의 오류납세자 수 및 오류항목 수가 모두 0이면 [내용검증하기] 클릭 후 [검증결과확인] 클릭
 - ⑤ 내용검증의 오류납세자 수 및 오류항목 수가 모두 0이면 정상납세자 수를 확인 후 [전자파일제출 이동] 클릭
 - ⑥ [전자파일 제출 화면]에서 정상 변환된 제출 가능한 신고서 목록 확인 후 [전자파일 제출하기] 버튼 클릭
 - ⑦ 일괄접수증 확인
 - ⑧ [STEP2. 신고내역]으로 이동하여 신고서(납부서) 출력
- 신고결과 확인 :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한 내역을 확인 가능

※ 파일형식 검증하기 클릭 후 암호입력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홈택스 하단 [통합설치프로그램]의 "파일 복호화(NTS-CRYPTO)"를 실행

다. 작성방식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에 의해 직접 작성하여 전송)

- 원천세 신고 메뉴 중 [정기신고 작성] 버튼 클릭
- 귀속연월, 징수의무자 기본사항 및 원천징수 신고구분과 신고할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 기본사항을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징수의무자 기본정보 신고서 불러오기 새로작성하기

* 제출년월 2019 년 03 월 * 귀속년월 2019 년 02 월 * 지급년월 2019 년 02 월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확인 ※ 확인해야만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구분

* 원천신고구분 매월 반기 * 신고구분 정기 수정 기한후

연말정산 연말정산포함 소득처분 소득처분신고 환급신청 환급신청

원천징수의무자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010 - 555 - **** 전자우편주소 tw* @ aa.aa -선택-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03174 주소검색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52-9 802호(내수동, 경희목장 서노 1시도)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목장 서노 1시도 802호

* 일괄납부여부 예 아니요 * 사업자단위과세여부 예 아니요

소득종류선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추징세액

양도소득 법인원천 수정신고(세액)

- (1) 귀속연월 : 신고서에 해당하는 귀속월을 작성
- (2) 연말정산포함 : 연말정산 소득(A04,A05,A06,A26,A44,A46) 입력시 체크
- (3) 소득처분신고 : 소득처분 신고시 체크
- (4) 환급신청 : 환급액을 당월에 환급받을 경우 체크
- (5) 소득종류선택 : 해당 월에 지급된 소득이 있을 경우 전부 체크
- (6) 수정신고(세액) : 수정신고와 함께 신고하는 정기신고인 경우에 체크하고,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환급 세액을 가감하여 징수 세액 란에 입력

○ 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감도 | 101-82-42933 | 제출여부 >>> 재제출 작성중입니다. | 미리보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아래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이면 환급세액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근로소득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간이세액	A01	5	5,000,000	5,000			
중도퇴사	A02	1	10,000,000	-1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	A04						
연말정...	A05						
연말정...	A06						
가감계	A10	6	15,000,000	-5,000			

※ 연말정산_합계(A04)에는 연말정산 대상 인원 및 총지급금액만 넣으며, 연말정산_분납신청(A05)에는 분납신청한 인원 및 분납신청금액을 넣고 연말정산_납부금액(A06)에는 연말정산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위: 원)

> 이자소득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이자소득	A50	1	1,500,000	1,000			1,000

- ▶ 타 소득에 조정한급을 해야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9)당월조정 환급세액란에 기재
 ※ (9)당월조정 환급세액란은 (+)금액으로 입력하여야 정상적으로 납부 세액에서 차감됨

가감계	A10	6	15,000,000	-5,000			
-----	-----	---	------------	--------	--	--	--

> 이자소득 (단위: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이자소득	A50	1	1,500,000	1,000			1,000

-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환급신청 여부에 체크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액란에 환급받을 금액을 반드시 작성(차월이월 환급세액 내의 금액만 환급신청 가능)
- ▶ 이월시킨 환급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12)전월미환급세액에 전월 신고서의 (20)차월이월 환급세액 금액을 입력하고, (13)기환급 신청세액에는 전월 신고서의 (21)환급신청액을 입력

귀속 2019년 01월, 지급 2019년 01월

> 당월 발생 환급 세액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

(15)일반환급	(16)선택재산(금융회사 등)	(17)그 밖의 환급세액
88,000 원	0 원	금융회사 등: 0 원 합 병 등: 0 원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하려면, 차월이월 승계명세서 작성 버튼을 누르세요.

● 환급조정 및 신청세액

(18)조정대상환급세액(14+15+16+17)	(19)당월 조정환급 세액 합계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
88,000 원	0 원	88,000 원

※ 환급신청하려면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환급신청구분"에 체크 후 환급신청서부표를 작성합니다.

(21)환급신청액
20,000 원

귀속 2019년 02월, 지급 2019년 02월

● 환급세액 조정

>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12)전월미환급세액	(13)기환급 신청세액	(14)차감잔액(12-13)
82,900 원	20,000 원	62,900 원

- 신고서 부표 화면에서 소득종류를 확인한 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
 - ▶ 비거주자 항목은 원천징수 대상자 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체크
- 부표화면에서 본표에 작성한 소득내용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항목들의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등을 작성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 귀속

- 환급신청서부표 화면에서 환급대상이 되는 세액들에 대한 명세를 (21)환급신청액과 환급신청서 부표의 「⑥환급신청액」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입력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환급신청 내역 입력

(21)환급신청액 4,000 원

※ 위의 환급신청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의 (21)환급신청액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1)	(2)	(3)	(4)	(5)	(6)	(7)	(8)
소득의종류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소득 지급액	①결정세액	②계
근로소득	2019-02	2019-02	A04	19	5,000,000		
합 계				19	5,000,000	0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②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④차감세액	⑩분납금액	⑪조정환급세액	⑥환급신청액
	⑧기납부세액 [주(현)]	⑨기납부세액 [종(전)]				
56,000	56,000		-6,000			6,000
70,000	70,000		-10,000		6,000	4,000
126,000	126,000	0	-16,000	0	6,000	10,000

- (1) 소득의 종류 : 환급금액이 산출된 소득의 종류를 선택.
- (2) 귀속연월 : 환급세액이 발생한 신고서의 귀속연월을 입력
- (3) 지급연월 : 환급세액이 발생한 신고서의 지급연월을 입력
- (4) 코드 : 환급금액이 산출된 소득코드를 선택.
- (5) 인원 : 환급대상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입력
- (6) 소득 지급액 : 환급대상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총지급액을 입력
- (7) 결정세액 :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결정세액 합계액을 입력
- (8) 기납부세액[주(현)] :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주(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
- (9) 기납부세액[종(전)] :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종(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
- (10) 차감세액 :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 합계액을 입력
- (11) 분납금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5(분납신청)의 징수 세액란의 ⑥소득세 등 금액을 입력
- (12) 조정환급세액 : 환급세액에서 자동적으로 차가감되는 같은 세목의 납부금액과 타 세목의 (9)당월조정환급세액을 합하여 입력

○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 ▶ 「기납부세액 명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 다만, 환급대상 소득코드가 수정신고(A90)인 경우에는 첨부대상이 아님
- ▶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한 후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환급신청 내역 입력

(21)환급신청액 원

※ 위의 환급신청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의 (21)환급신청액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소득의종류	귀속년월	지급년월	코드	인원	소득 지급액	①결정 세액	②가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2019-02	2019-02	A04	19	5,000,000		
합 계						19	5,000,000	0

※ 기납부세액 [주(현), 중(전)]이 있는 경우 하단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는 ②차감세액 값을 통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③조정환급세액은 환급채액에서 자동적으로 차가감되는 같은 세목의 납부금액과 더 세목에 입력된 (9)당월조정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2)전월 미환급세액 원

(20)차감이월 환급세액(18-19) 원

※ 위의 (12)전월 미환급세액 및 (20)차감이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 (12)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하단의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계좌좌신고

은행

계좌번호 ※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 원천징수채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대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징급금 계좌는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2천만원이상의 경우 별도 "계좌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내역이 조회되므로 안내되는 오류메시지를 보고, 오류에 대해 정정하여야 접수 가능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 ✕

· 신고내용

과세년월	2019년 02월	신고구분	정기(확정)
신고서종류	원천징수미행상황신고서	신고유형	정기신고

· 오류내역

서식명	항목명	내용검증 오류내역
원천징수미행상황신고서...	환급계좌	환급계좌번호는 6자이상 16자이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미행상황신고서...	환급계좌	은행코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미행상황신고서...	㉔출지금액	신고서와 부표에 입력된 신고내용(출지금액)이 일치하지...
원천징수미행상황신고서...	㉕소득세 등	신고서와 부표에 입력된 신고내용(소득세 등 징수세액)...
원천징수미행상황신고서...	㉖당월조정환급세액	신고서와 부표에 입력된 신고내용(조정환급세액)이 일치...
원천징수미행상황신고서...	㉔출지금액	신고서와 부표에 입력된 신고내용(출지금액)이 일치하지...
원천징수미행상황신고서...	㉕소득세 등	신고서와 부표에 입력된 신고내용(소득세 등 징수세액)...
원천징수미행상황신고서...	㉖당월조정환급세액	신고서와 부표에 입력된 신고내용(조정환급세액)이 일치...

-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신고의 경우 [신고서제출] 화면으로 이동하며, 원천세 신고 내용 요약을 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진행
-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접수증의 접수결과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보관
- 신고완료 후 Step2로 이동하여 신고서와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각 세목별로 납부서가 출력되나 수정신고세액 납부서는 직접 작성
 - ※ 저축해지추징세액의 납부서는 세목이 근로소득세로 발행됨

라. 변환방식 (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파일 변환하여 전송)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에서 [파일변환 신고] 버튼 클릭

원천세 신고 도움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료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 일반신고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
작성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환할 파일 선택후 [파일형식검증하기]를 클릭하여 전자파일 생성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 후,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버튼을 눌러 오류검증을 마칩
 - * [검증결과확인]→ [내용검증하기]→ [검증결과확인]→ [전자파일제출 이동] → 신고서요약내용 확인 후, [전자파일제출하기]
- 내용검증까지 오류항목 없이 정상적으로 오류검증이 끝났을 경우, [전자파일제출 이동]을 클릭하여 화면 이동 후,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통해 정상적으로 변환된 전자파일을 제출할 수 있음

마. 신고결과 확인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의 [STEP2신고내역] 클릭

원천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 (신고이용시간 : 06:00~24:00)
-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Step 2.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 출력은 [Step 2.신고내역]의 납부서()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 도움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 일반신고

정기신고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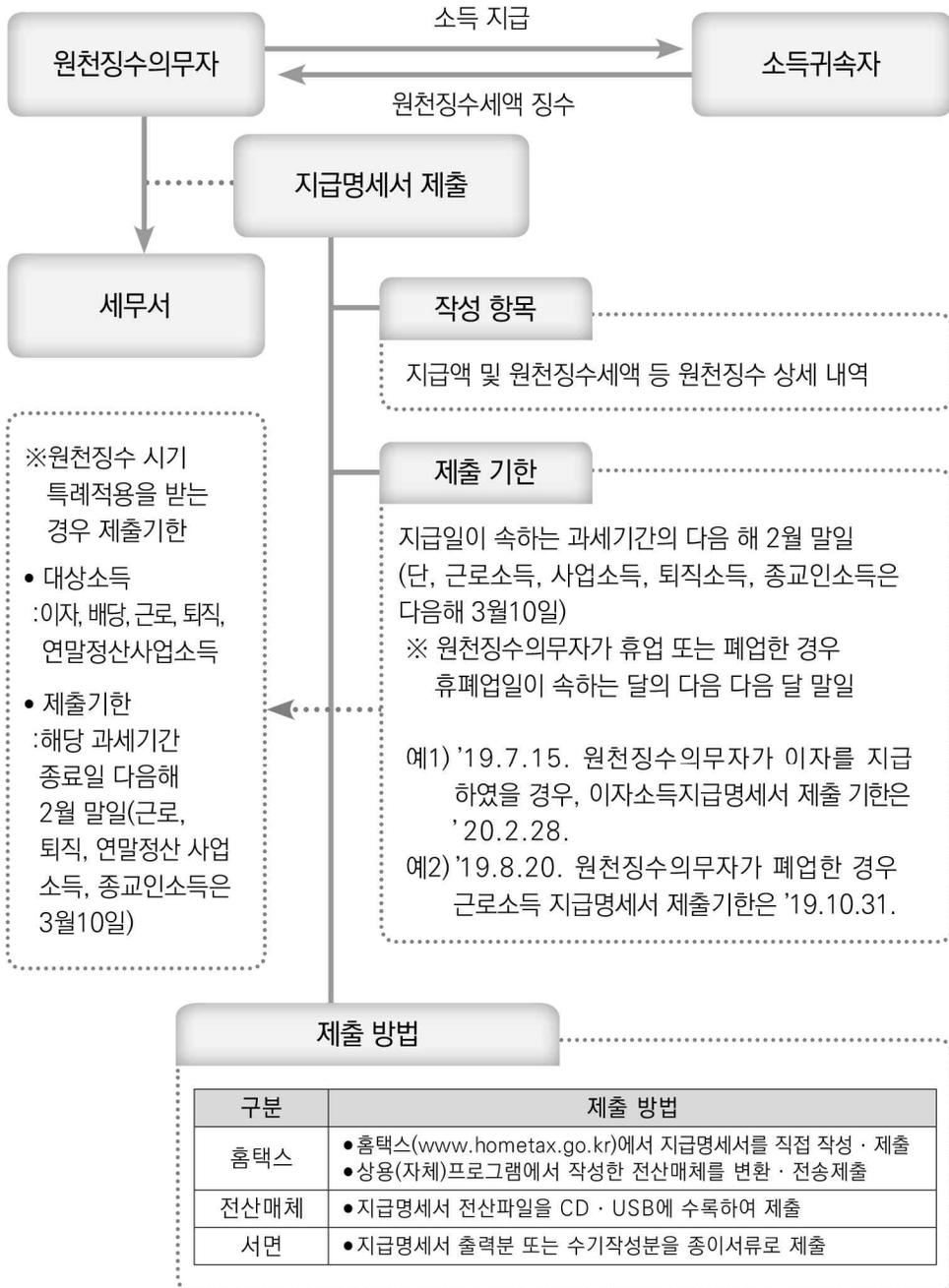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 작성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 신고내역 확인
 - ▶ 신고서, 접수번호(신고서보기) 란을 클릭하면 조회 가능
 -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서] 아이콘을 클릭해도 납부서 조회가 되지 않음
 - ▶ 납부서는 소득별로 각각 발행되며, 저축해지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와 함께 발행됨 (수정신고의 경우 세금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화면에서 직접 납부서를 작성)
- 홈택스 [My NTS - 세금신고내역]에서 원천세로 조회할 경우, 현재년도의 1년 전까지 신고된 전자신고 및 서면신고분을 신고한 뒤 약 2개월 후에 서식형태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음
 - ※ 모든 신고내역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지급명세서 제출 개요



1 ▶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구 분	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수정

- ▶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2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 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 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3월	4월 10일	7월 10일
	4월~6월	7월 10일	10월 10일
	7월~9월	10월 10일	다음연도 1월 10일
	10월~12월	다음연도 1월 10일	다음연도 4월 10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1월~6월	7월 10일	10월 10일
	7월~12월	다음연도 1월 10일	다음연도 4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 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3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자
 -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시기
 - ▶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일은 해당 귀속 과세기간 종료일임
 -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음

4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자 및 제출시기
 -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연금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시기
 - ▶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5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자

-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 법인,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등의 소재지를 하는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포함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 보훈급여금등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 *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기준 이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印稅) 및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종교활동비

- ▶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소칙 §97 3)

○ 제출시기

-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종교인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까지
-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사례

▶ 일반적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귀속 연도 2019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총지 급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소득 금액계	⑨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세	⑪ 지방 소득세	⑫ 농어촌 특별세	⑬ 계				
(주)이골림	000-00-00000	서울 종로 종로5가	3	8	7,000,000	-	2,200,000	440,000	44,000			484,000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 외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 총액	㉑ 비과세 소득	㉒ 필요 경비	㉓ 소득 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60	이세빛	XXXXXXXX-XXXXXXX	내국인	2019	1	1,000,000	-	-	1,000,000	20%	200,000	20,000		220,000
2	75	한금연	XXXXXXXX-XXXXXXX	내국인	2019	2	1,000,000	-	800,000	200,000	20%	40,000	4,000		44,000
3	76	박지일	XXXXXXXX-XXXXXXX	내국인	2019	3	5,000,000	-	4,000,000	1,000,000	20%	200,000	20,000		220,000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경우

거주자에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명세서』를 작성,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귀속 연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 번호		
2019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총지급 금액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소득 금액	⑨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세	⑪ 지방 소득세	⑫ 농어촌 특별세	⑬ 계				
(주)이글림	000-00-00000	서울 종로 종로5가	1	1	70,000,000	-	14,000,000	2,800,000	280,000			3,080,000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 외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 총액	㉑ 비과세 소득	㉒ 필요 경비	㉓ 소득 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60	이세빛	XXXXXXXX-XXXXXXX	내국인	2019	1	70,000,000	-	-	14,000,000	20%	2,800,000	280,000		3,080,000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② 법인명(상호)		(주)이글림		③ 성명		△△△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서울 종로 종로5가								
⑥ 일련 번호	⑦ 작품 코드	⑧ 지급연월일			⑨ 총 양도가액 (매매가액)	⑩ 지급액	⑪양도자		⑫양수자		⑬ 작가	⑭ 작품 명	⑮ 재질	⑯ 크기 가로(mm) × 세로(mm) 또는 작품호수 등	⑰ 제작 연도
		연	월	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성명 (상호)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1	1	19	6	1	70,000,000	66,920,000	○○○	X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X	AAA	BBB		00×00	1989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 ⑦작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양화	동양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석판화	골동품	기타
작품코드	1	2	3	4	5	6	7	8	9	10

- ⑯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의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7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의무자
 -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
 - ▶ 내국법인(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봄)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 유의 사항
 - ▶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됨
 - ▶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제출시기
 -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 다음의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금액(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8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자
 -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기한
 -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
- ▶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소득세법 제119조 3호, 법인세법 제93조 3호)
- ▶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 ※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 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 ▶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
-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 ※ 다만,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9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 기존에 서면이나 전산매체(USB 등)로 직접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내 제출만 가능하며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 (단, 근로소득·의료비 지급명세서와 2016년 이전 귀속분 기부금명세서는 수정·기한 후 제출 가능)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을 위한 홈택스 가입 및 이용시간

- ▶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을 위한 홈택스 가입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

 -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을 위한 홈택스 이용 시간

제출기간 내 06 : 00~24 : 00 (휴일, 공휴일 포함)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대상서식

- ▶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한 서식은 12종이며, 그 외의 지급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관할세무서에 제출

서 식 명	서 식 번 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1)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2)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별지 제23호서식(3)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4)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5)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별지 제23호서식(6)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1)
의료비 지급명세서	별지 제43호서식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7)
(부동산 등)양도소득 지급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8)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6)

- ▶ (기부금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근로자가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공제받는 지급명세서에 기부금명세서를 포함하여 제출(2017년 이후 귀속분부터)
※ 기부금명세서는 2016년 이전 귀속분만 수정·기한 후 제출 가능
- ▶ (의료비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서비스

구 분	내 용
연간합산 제출	지급명세서를 연간 합산하여 법정기한 내 연 1회 제출
수시 제출	휴·폐업 등으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수시로 제출
수정·기한 후 제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거나, 법정기한 후에 제출

① 연간합산제출 서비스

-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귀속의 지급명세서를 연간 합산하여 법정기한내에 연 1회 제출 가능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3월10일)까지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구분
2월말	거주자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제외),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등
3월 10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사업소득(봉사로 포함), 의료비,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연금계좌, 종교인소득(연말정산용)

- 법정기한내에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② 수시제출 서비스

-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휴·폐업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를 수시 제출 가능
-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7월말 ~ 8월초부터 서비스를 개시

③ 수정·기한 후 제출 서비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간합산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연간합산으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자별로 수정해서 일별로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근로, 기부금(2016년 이전 귀속분에 한함), 의료비 지급명세서만 수정·기한 후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출 당일을 기준으로 최종제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직접작성제출방식은 '14년 귀속 이후, 변환제출방식은 '10년 귀속 이후에 대해 수정·기한 후 제출이 가능하고, 당해연도 제출분에 대한 수정·기한 후 제출 서비스는 4월말부터 운영

○ 지급명세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세무대리인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 홈택스,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 홈택스 부서사용자ID 등 다른 ID로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 수시제출하고 연간합산분으로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사 례

중도퇴사자 10건, 계속근무자 100건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①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퇴사자(10건)는 수시제출 서비스(7월~12월)로 제출하고, 계속근무자(100건)는 연간합산제출 서비스로 제출
→ 위 경우 2장의 접수증이 발급(총제출건수 110건, 정상제출)
- ②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합산 제출기간(다음연도 3월 10일)에 연간합산제출 서비스로 제출
→ 위 경우 1장의 접수증이 발급(총제출건수 110건, 정상제출)

10 직접작성 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

가. 제출방법

○ 홈택스 로그인

-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 제출 경로

- ▶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 제출할 지급명세서 선택 → [제출방식 선택]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이나 [변환 제출 방식] 선택
 -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제출화면의 [이용안내] 메뉴에서 [연말정산 종합 안내], [(총괄)부서 사용자 안내], [지급명세서 직접작성제출방식 안내], [지급명세서 변환제출방식 안내], [유의사항 안내] 등 주요 질문에 대한 안내 및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직접작성 제출방식

사용자가 홈택스 화면에서 지급명세서를 직접 입력한 후 오류를 검증하여 제출(전송)하는 방식

기본사항 입력 → 상세내역 입력 → 자동계산 및 오류검증 → 과세자료 전송 → 접수증 확인

○ [제출방식 선택]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

○ [Step1.과세자료제출]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

① [01.기본정보 입력]에서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을 입력

- 귀속년도, 제출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확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Step1. 과세자료제출 Step2. 제출내역

01. 기본정보 입력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감도 님 | 101-82-42933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02. 상세내역 입력

03. 과세자료 제출

● 기본사항

- 지급명세서는 제출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1)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및 수시(월별)분할제출
 - 매출 제출이 가능하며, 그 달 말일까지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 자료로 인정합니다.
- 2) 연간합산제출
 - 연 1회 제출되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법정제출기간(2월~3월 10일)까지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 자료로 인정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전송한 자료는 직접작성화면에서 조회, 확인 후 제출해야 최종 전송자료로 인정합니다.
- 종도회사자의 자료는 수시로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연간합산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수시제출로 제출한 자료를 연간합산에 포함해 제출하면 중복 자료가 됩니다.)
- 제출완료된 자료 중 10,000건을 초과하는 자료는 불러올 수 없습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후 [상세내역 입력] 화면으로 이동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 현황]에서 소득자별 요약정보(송급여 등)를 조회 및 출력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 현황]은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만 이용 가능합니다.
- 1) [01.기본정보 입력]의 [저장 후 다음이동] > [02. 상세내역 입력] 좌측 메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 현황]
- 2) [Step2. 제출내역] > '제출년월' 설정 > [조회하기] 클릭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클릭 >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현황]

● 과세년월, 제출년월

① * 귀속년도 년

* 제출대상 연간 합산제출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수시(월별)분할제출

* 제출대상 * 제출년월 년 월

●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 (3)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확인** ②

* (1) 법인명(상호)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감도 * (2) 대표자(성명)

③ 저장 후 다음이동

월 페이지의 메시지

확인완료되었습니다.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동작

구 분	동 작
작성중인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중인 자료를 불러옴
전송된 자료가 있는 경우	[확인]을 클릭하여 전송된 자료를 불러오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새로 작성할지 선택할 수 있음
작성중인 자료와 전송된 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	작성중인 자료를 불러옴 (단, 상세화면에서 '제출자료불러오기' 기능을 을 이용해서 '전송'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02.상세내역 입력]에서 지급명세서 상세내역을 입력

- 소득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지급명세서 작성

Step1. 과세자료제출
Step2. 제출내역

01. 기본정보 입력

02. 상세내역 입력

03. 과세자료 제출

입력현황 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 현황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 명단

환과RN 남 | 101-02-75668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상세내역 입력

-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의 경우, 내·외국인에서 '외국인'을 먼저 선택 후 (7)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세액공제 순서에 맞게 '공제금액' 및 '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칠세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 혜택이 표준세액공제 19만원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보내기'로 보낸 자료를 확인 및 인쇄할 경우
 - 1) 하단의 [과세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과세자료 제출' 화면으로 이동해서 오른쪽 상단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2)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상이 뜨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형태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목록]에 등록된 자료를 수정할 경우, (33)보험료, (34)주력자금, (61)의료비 [공제금액조정하기], [소득세액공제 명세작성]의 장애인 부양가족의 '교육비공제'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초기화

* (7)주민등록번호		확인	* (6)성명	
거주구분	거주자		거주지역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내·외국인	내국인		국적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외국인당일세율	적용안함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부
세대주여부	세대주		연말정산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계속근로 <input type="radio"/> 중도퇴사

근무처 추가정보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종사업장연련번호

근무처별 소득명세 (단위 : 원)

구분	(13)급여	(14)상여	(15) 인정상여	(15)-1 주석태수	(15)-2 우리사주	(15)-3 임원퇴직	(16)계
* 주(원) 작성	0	0	0	0	0	0	0
총(전) 작성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목록에 등록
- 소득자를 모두 등록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을 클릭

결정세액 (단위 : 원)

(71)결정세액

자가감 세액 (단위 : 원)

구분	(78)소득세	(79)지방소득세	(80)동여존특별세	계
(72)결정세액	0	0	0	0
(73)총(전)근무지 기납부세액	0	0	0	0
(74)주(원)근무지 기납부세액	0	0	0	0
(75)납부특례세액	0	0	0	0
(76)차감정수세액	0	0	0	0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목록 (단위 : 원)

선택	No	성명	주민등록번호	총근무처수	차감정수세액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동여존특별세	
<input type="checkbox"/>	1	부양가족	860120-*****	1	3,117,500	311,750	0	3,429,250

○ 지급명세서 제출(전송)

- ▶ [03.과세자료 제출]에서 제출할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요약]정보를 확인하고 오른쪽 상단의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형태로 사전 확인 가능

과세자료 제출하기

Step 1. 과세자료제출 Step 2. 제출내역

01. 기본정보 입력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감도 남 | 101-82-42933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3 미리보기

02. 상세내역 입력

03. 과세자료 제출 1

과세자료 제출

전송 후에는 STEP 2.제출내역 탭을 눌러 접수증을 인쇄/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요약 2

사업자등록번호	101-82-42933	상호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감도
과세년월	2017-01	제출일자(시각)	2017-08-11 (10:22:50)
총자료건수	1건	총자료금액	100,000,000원
과세자료제출서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맞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전 제출하기 4

- ▶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료 제출
※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접수증 확인

- ▶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자동 팝업으로 보임

○ 제출결과확인

- ▶ [Step2.제출내역]의 [과세자료제출목록]에서 [제출년월]을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내역 확인
- ▶ 제출내역에서 접수증을 클릭하여 건수, 금액 등 제출결과를 다시 확인
- ▶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작성한 자료는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제출한 근로자의 정보를 미리보기로 볼 수 있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미리보기]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현황]과 [일괄출력] 기능 제공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제출한 자료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개인정보공개여부]를 '공개'로 선택한 경우 일괄출력하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모두 표시 가능

다. 변환제출방식

사용자가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 개발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제출방식을 이용하여 오류검증하고 제출(전송)하는 방식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에 게시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형식으로 자료 생성할 것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과세자료파일 생성 → 홈택스에서 과세자료 오류검증 → 과세자료 전송 접수증 확인

- [제출방식 선택]에서 [변환제출방식]을 선택
- [Step1.과세자료제출]의 [01.전자파일변환]에서 오류 검증
 - ▶ 제출할 전산매체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하고 민원종류와 과세연월을 확인



- ▶ [파일형식검증하기]를 클릭하고 [검증결과확인]을 클릭

● 변환대상파일선택

> 선택한 파일내역 [찾아보기]

NO	전자파일명	파일크기
1	C1008100.002_개발	8,060 Byte

● 처리내역

※ 오류납세자수, 정상납세자수 건수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파일처리내역 [검증결과확인]

파일이름	파일형식검증			내용검증	
	대상 납세자수	오류 납세자수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오류납세자수 (확인납세자수)	정상납세자수
	라인(줄)수	오류항목수		오류항목수	
C1008100.002_개발					

> 진행현황

· [파일형식검증하기] 눌러 검증을 진행하세요.

[검증결과확인]

[파일형식검증하기] → [내용검증하기] → [전자파일제출 이동]

- ▶ 형식검증에 오류가 없으면 오류납세자수가 0이 됨. 0이 아닐 경우 숫자를 클릭하고 해당 오류를 확인
- ▶ 형식검증이 오류없이 끝나면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를 확인 → [내용검증하기]를 선택 → [검증결과확인]을 선택

● 처리내역

※ 오류납세자수, 정상납세자수 건수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파일처리내역 [검증결과확인]

파일이름	파일형식검증			내용검증	
	대상 납세자수	오류 납세자수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오류납세자수 (확인납세자수)	정상납세자수
	라인(줄)수	오류항목수		오류항목수	
C1008100.002_개발	1	0	1	0(0)	0
	5	0		0	

> 진행현황

· [파일형식검증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파일 내용검증을 위해 [내용검증하기]를 클릭하세요.

[검증결과확인]

[파일형식검증완료] → [내용검증하기] → [전자파일제출 이동]

- ▶ 내용검증에 오류가 없으면 오류납세자수와 확인납세자수가 0이 되고, 0이 아닐 경우 숫자를 클릭하고 해당오류를 확인
- ▶ 정상납세자수를 확인하고 숫자를 클릭하면 [02.변환결과조회]의 [정상자료] 탭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인쇄 가능

처리내역

※ 오류납세자수, 정상납세자수 건수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파일처리내역 검증결과확인

파일이름	파일형식검증			내용검증	
	대상 납세자수	오류 납세자수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오류납세자수 (확인납세자수)	정상납세자수
	라인(줄)수	오류항목수		오류항목수	
C1008100.002_개발	1	0	1	0 (0)	1
	5	0		0	

▶ 진행현황 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파일제출 이동]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세요.

파일형식검증완료 → 내용검증완료 → 전자파일제출 이동

- ▶ [전자파일제출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03.전자파일제출]로 이동해서 전자파일제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

전산매체 제출

Step 1. 과세자료제출 Step 2. 제출내역

01. 전자파일변환
02. 변환결과조회
03. 전자파일제출

전자파일 제출

정상 변환된 제출 가능한 자료 목록입니다.
제출하시려면 [전자파일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자파일 제출하기] 버튼 클릭후 접수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종류명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과세년월 :

번호	제출년월	과세년월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건수	생성일	전송일
1			100-81-00002	테스트법인(본점)	1		

1 총1건(1/1)

이전 전자파일 제출하기

○ 지급명세서 제출(전송)

- ▶ [Step1.과세자료제출]의 [03.전자파일제출]에서 제출할 지급명세서의 요약정보를 확인하고 제출

○ 접수증 확인

- ▶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자동 팝업으로 보임
- ▶ '소득자 건수' ❶를 클릭하면 소득자 리스트 볼 수 있는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고, [인쇄하기] ❷ 클릭시 접수증 인쇄가 가능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 (양괄제출)

과세자료종류	건수	금액(주원+종원) 합계	유류세액(주원+종원) 합계
건수(소득자 건수)	1건 (1건)	5,430,995 원	1,941 원
비과세소득(증원소득 포함)	1,676,520 원	1,941 원	0 원
과징세액(지방소득세) 합계	194 원	1,941 원	1,941 원
차감할수세액(소득세) 합계	-1,941 원	0 원	-1,941 원
차감할수세액(농특세) 합계	0 원	0 원	-2,135 원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 (양괄제출) 상세

과세자료종류	연도	과세구분	과세구분	금액(주원+종원)	유류세액(주원+종원)
건수(소득자 건수)	2019	종합소득(주원+종원) 합계	종합소득	5,430,995 원	1,941 원
비과세소득(증원소득 포함)	2019	과징세액(소득세) 합계	과징세액	1,941 원	0 원
과징세액(지방소득세) 합계	2019	과징세액(농특세) 합계	과징세액	1,941 원	1,941 원
차감할수세액(소득세) 합계	2019	차감할수세액(지방소득세) 합계	차감할수세액	-1,941 원	-1,941 원
차감할수세액(농특세) 합계	2019	차감할수세액(개) 합계	차감할수세액	0 원	-2,135 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쇄하기 ❷

○ 제출결과확인

- ▶ [Step2.제출내역]의 [과세자료제출목록]에서 [제출년월]을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내역을 확인
- ▶ 접수증을 클릭하여 건수, 금액 등 제출결과를 재확인

11 > 전자신고한 지급명세서 삭제

가. 전자신고 삭제

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이중으로 제출한 경우 등 지급명세서를 삭제하기 위해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접수하면 지급명세서를 삭제 처리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제출
 - ▶ 제출기간 마감일 +2일 내에서 홈택스 제출이 가능하며, 2일이 지난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 (제출방법)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과세자료 삭제요청] 또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 요청]에서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제출

홈택스 [자료실]에서 삭제요청서로 검색하거나, 111번 게시물을 찾아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서면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

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 동일소득에 대해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전자제출 방식(작성·변환방식)에 상관없이 제출기한 내에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로그인 후 홈택스 창을 여러 개 띄워서 작업할 수 없음. 여러 창에서 동시에 작업하면 입력 데이터가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제출한 자료는 동일 원천징수의무자 자료라도 부서사용자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로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다시 불러와서 제출하면 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됨



- 제출기한이 경과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이나 전산 매체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려면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제출

12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Q & A

■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 ▶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 할 수 없음 (금융은 본점이 지점자료 제출 가능)
- ▶ 변환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레코드는 본점사업자번호를, B레코드에서는 지점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이미 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 (직접작성방식)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다시 제출
- ▶ (변환방식) 지급명세서를 수정한 후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
 -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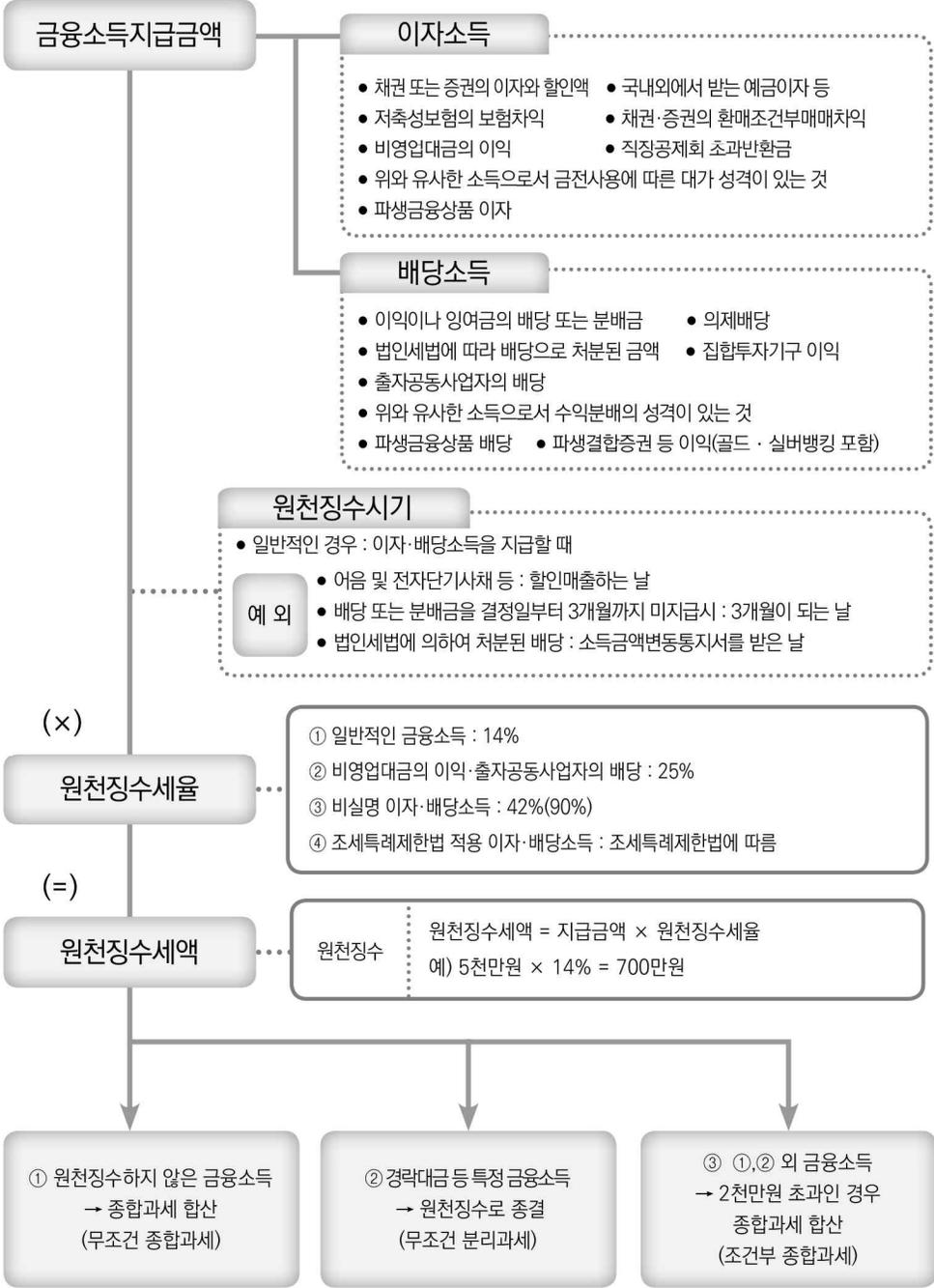
■ 일부 자료의 누락이 발생했는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 ▶ 누락분만 제출하면 안되며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직접작성방식)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누락분을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
 - (변환방식) 누락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

■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에서 지급 명세서 선택 → [Step2.제출내역]에서 [나의 과세자료 제출현황] 클릭 → 접수일자를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 → 제출된 자료목록을 확인하고 [접수증] 인쇄

금융소득 원천징수 개요



1 이자소득의 범위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의 이자 등

-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2 > 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 이자소득금액
 - ▶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6조 2항)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예누리되는 금액
 -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이전받은 금전 등을 동등한 물건으로 반환하는 의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시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 ▶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에 해당함
 -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함
 - ▶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지급시 원천징수
-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7항)
 -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임
 - ▶ 도산으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 사망하여 원금과 이자의 전부(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중도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받는 환급금(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료)를 뺀 금액임

$$\text{보험차익} = \text{보험금} - \text{납입보험료}$$

3 > 배당소득의 범위

-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상법 개정에 따라 건설이자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삭제(2012.4.15. 이후 발생분부터)
 -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
 - ▶ 의제배당
 -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규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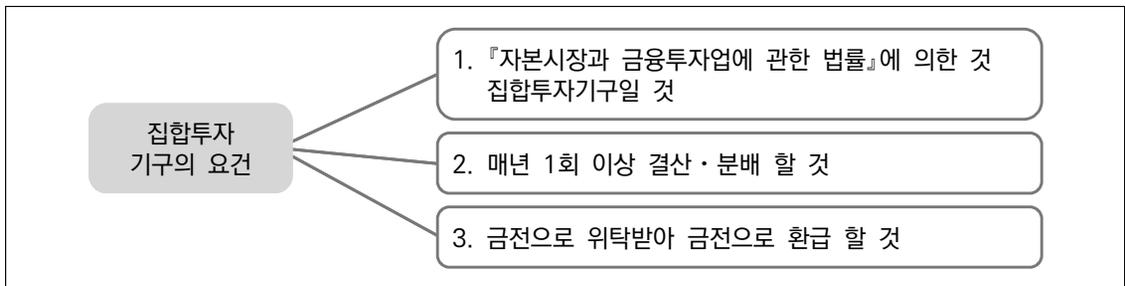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 배당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4 배당소득 주요 포인트

-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임
-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 ▶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
 - ▶ 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고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금액 계산

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국외 설정된 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분배 유보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한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 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4.1. 이후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 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 및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은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함
 -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 위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 다음의 소득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구 분	소득구분	관련 법령	비 고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이자·배당	소득세법 제12조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배 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4항	'20.12.31까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이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항	거주자와 내국법인,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식량작물 재배업 발생분 전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	배 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2항	'21.12.31까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과세연도 1,200만원 이내)	배 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2항	'21.12.31까지
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거주자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분)	배 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4항	'21.12.31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인 연간 240만원 이하)	이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20.12.31까지 가입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1인 납입 5,000만원 이하)	이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1항	'19.12.31까지 가입
농·수·신탁 등의 조합원·회원 등 출자금 (1인 납입 1,000만원 이하)	배 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20.12.31까지
농·수·신탁 등의 조합원·회원 등 예탁금 (1인 납입 3,000만원 이하)	이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1항	'20.12.31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1인 납입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1항	'21.12.31까지

7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		수입시기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이자소득의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하는 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함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위에서 열거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		수입시기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법 제17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그 지급을 받은 날
의제배당	감자, 퇴사·탈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를 한 날,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8 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나 일부의 경우에는 달리 정하고 있음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 ▶ 금융회사 매출 또는 중개 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
 - *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예약된 경우는 선택한 경우만 해당
 -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 ※ (동업기업과세특례)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제도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세법 제131조 2항)
 - ▶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 ▶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금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 다만, 11월~12월 사이 처분으로 다음 연도 2월까지 배당소득 미지급시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9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의무자
 -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금을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

〈비실명자산 금융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는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하여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시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무조건 분리과세)
 - * 소득세법 §129 (원천징수세율) ② 제2호, 금융실명법 §5 (비실명자산소득 차등과세)
-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기본세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대해서는 실질 소유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됨('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소득세법 §155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구 분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6조 1항 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 단, 적격P2P업체로부터 '20.1.1.~'20.12.31.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 : 14%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6~42%)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차명계좌 포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차등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90%
그 밖의 이자소득	14%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구 분	원천징수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차명계좌 포함)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차등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90%
그 밖의 배당소득	14%

○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 4항)

- ▶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
- ▶ 외국소득세액이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사 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총액의 15%(주민세 포함)가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에서 과세된 배당총액의 15%를 적용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

-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 제한 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 적용 (원천세과-485, 2012.9.18.)

10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의무자

- ▶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예탁자 자기분은 예탁 결제원, 예탁자 고객분은 예탁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원천징수 대상 소득(법인세법 제7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등) 제외

- ▶ 이자소득금액
- ▶ 배당소득금액(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자본확충목적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 제외
- ▶ 위 외의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 등(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만 원천징수 대상

○ 원천징수 방법

- ▶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징수한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 세율

구 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14%

11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소득세법 제133조 1항 단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급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함
 - ▶ 금융회사 등이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 ▶ 금융회사 등이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소득세법 제133조 2항)
 -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다만, 지급받은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구하거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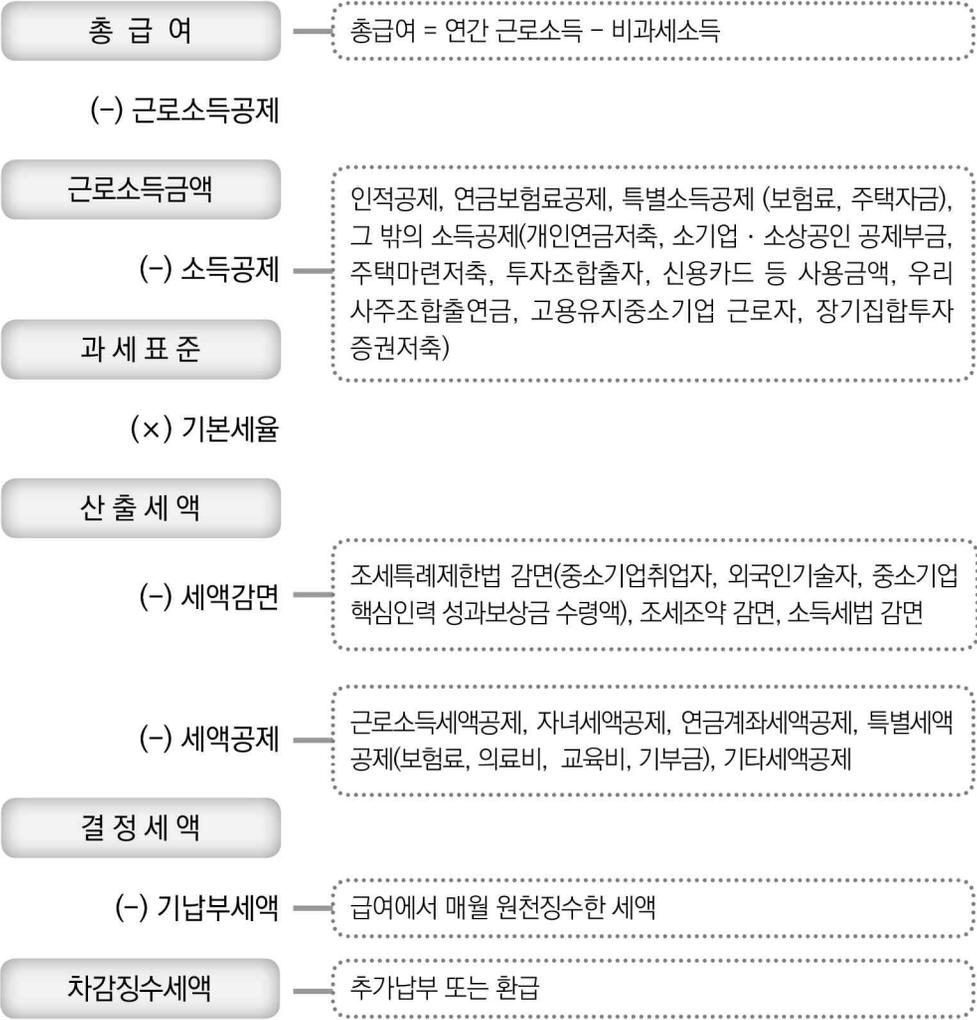
원천징수부의 비치 · 기록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 · 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 · 기록하여야 함
-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 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 · 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 · 기록한 것으로 함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1 근로소득의 범위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	소득발생처	과세여부	비 고
거주자	국 내	과 세	
	국 외	과 세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국 내	과 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 외	과세제외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사 례

□ 강의 대가 소득구분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로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로	사업소득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사 례

□ 고문료 소득구분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 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기타소득

사 례

□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지급받는 강의료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 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2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사 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건표)
 (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

사 례

□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
 월 급여액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 = 6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040원임(소득세 6,400, 지방소득세 640)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2,500	2,510	41,63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 80% 선택시 5,630원, 120% 선택시 8,440원을 원천징수

○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구분	계 산 방 법
원칙	①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㉓ × ㉒) - ㉑ ㉓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㉒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㉑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 연도중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특례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지급대상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
-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text{지급대상기간} = \text{각각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div \text{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사 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면?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 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 3개월
-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6개월 = (9+3) ÷ 2

3 > 일용근로소득

○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구 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개 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 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 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비과세소득제외) - 15만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 (고용관계 판단)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의 구분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원천세과-501, 2011.08.18.)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계 산 구 조	금 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 : 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함
-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천세과-216, 2011.04.08)
-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원 칙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 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
- ▶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유의사항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 ※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

○ 경조금

-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5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²⁾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적용시기) 2018.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부터 적용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주식에는 신주인수권 포함)

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임
-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 제외)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³⁾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유의사항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액의 5분의 4(2016년 이전 부여분은 3분의 2) 해당 금액(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납부
- 이후,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2016년 이전 부여분은 2개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2016년 이전분 2분의 1) 해당액을 각각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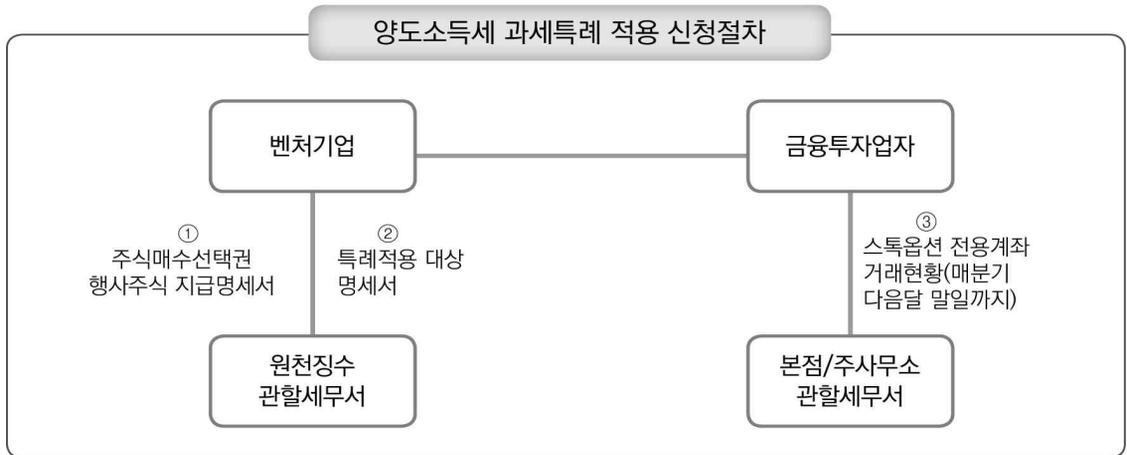
※ 사례 : 주식매수선택권 '17. 1. 1. 부여 ⇨ '18. 5. 1. 행사(소득세 5,000,000원)



3)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 퇴사 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아니하고 양도시 양도 소득으로 과세선택 가능
 - * (요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연간 행사금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것
- (신청방법) 벤처기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옵션행사일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



-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스톡옵션 전용 계좌의 거래현황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라. 창업자 등의 종업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 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은 경우 행사 이익 중 일정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함
- 과세특례 한도

부여 기간	특례대상 기준	특례 한도
1999.12.31. 이전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합계액 5천만원
2000.1.1. ~ 2000.12.31.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합계액 3천만원
2001.1.1. ~ 2006.12.31.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6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이 받는 수당 포함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함
 -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대상 연구기관		대상 근로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방호·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 등 종사하는 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 ※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0호)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7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함

○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분 류	대 상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운전·운송 관련직,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종사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통신 관련 판매, 음식·판매·계기·자판기·주차관리·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 공장시설의 신설,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월정액급여 계산

①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②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①-②	월정액급여

※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 급여 중 월정액급여에 포함 여부 검토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월차수당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과세 대상 소득	한 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소득46011-2615, 1997.10.10.)

사 례

□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① 기본급	120만원	② 가족수당(매월)	6만원
③ 식대(매월)	13만원	④ 연장근로수당	1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⑦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⑧ 상여(부정기)	100만원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원 = 284만원(①~⑧ 합계) - 100만원(⑥부정기적 상여) - 20만원(⑦실비변상적 급여) - 25만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8 >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

▶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함

*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비과세 한도 및 적용방법

한도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적용방법	<p>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p> <p>예) 2월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부족분 50만원을 3월에 이월 공제하지 못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 □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는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포함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사이의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서 제22조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됨

○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사자의 비과세 금액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9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구분	내용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 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사 례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 월 5만원 = 15만원 - 10만원(비과세되는 식사대)

4)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 사용자의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10 > 외화나 물품으로 받은 근로소득

- 근로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전가액이 근로소득이 되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함

구 분	적용 환율 기준일	적용환율
정기급여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정기급여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정기 급여일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방법)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www. smbs.biz)의 메뉴 중[환율조회]에서 확인

-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 형태		근로소득 계산 방법
물품으로 지급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	당해 사업자의 판매가액
	그 외	시 가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		액면가액
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 (주주로서 받은 경우는 제외)		납입일의 신주가액에서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그 외 기타 방법으로 지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준용 ⁵⁾

* 신주가액이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소득세법시행령 §51⑥)

5)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11 > 근로소득 수입시기

○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짐

근로소득 구분	수입시기	귀속연도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처분결의일이 속한 연도
인정상여 ⁶⁾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 이 경우 2개 연도에 걸친 때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해고기간이 속하는 연도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확정된 날.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	

6)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12 >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가. 외국인의 연말정산

-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거주자 중 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구 분	내 용
대상소득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21.12.31.까지만 해당)까지 받는 근로소득
세액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불구하고 19% 원천징수 가능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 해당 근로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신청절차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무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나.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22조)

-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연말정산 방법
 -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주자를 준용하여 계산
 - ▶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 배제

13 >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

항 목		구 분		비 고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연간 근로소득		국외 원천 소득 포함	국내 원천 소득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단기거주 외국인은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만 공제	
	추가공제	○	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함
특별 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	×	
	주택자금	×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주택마련저축	×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에 한함
세액공제	근로소득	○	○	
	자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	
	납세조합	○	○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시 적용

14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

-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환급세액)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

단 계	결 과	계 산 방 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15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총급여액은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사 례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16 인적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적용
 ※ 이 경우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봄

가.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청

구 분		나이 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생계 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배우자 (법정혼인만 인정)				
부양 가족 ⁷⁾	직계존속 ⁸⁾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⁹⁾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¹⁰⁾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수급자	제한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7)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재혼인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사람 포함
 8)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혼인중임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혼은 제외) 포함
 9) 다음의 경우를 포함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10)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 공제 여부 판정

-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의함
- * 기본공제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에 포함

○ 생계 요건

- ▶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양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 다만,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 가능
- ▶ 근로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유의사항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시퇴거 동거가족 상황표와 아래의 서류를 연말정산시(퇴직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일시퇴거 사유	제출 서류	
	퇴거사유 입증	공통 제출서류
취 학	당해 학교(학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질병요양	당해 의료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 무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 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기준 요건

-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 ▶ 연간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로 산정된 소득금액이며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 등은 제외

○ 기본공제 신청방법

근로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기본공제란에 “○” 표시하고 부양가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입양자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 군, 구청)
- ▶ 그 밖에 부양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을 2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간 금액으로 공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증빙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를 비교하여 공제대상자의 범위·연령 요건이 부합하는지 검토(“관계코드” 적정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근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¹¹⁾

나. 추가 공제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로 공제

구 분		공제금액	비 고
경로우대(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 애 인		1명당 연 200만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부녀자 공 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한부모 공 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장애인의 범위

구 분	증빙서류	증빙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전자민원 G4C(www.egov.go.kr)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상이급수 표시)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¹²⁾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11)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단서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계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소득46011-2812, 1997.11.01)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서면법규-782, 2013.7.8.)도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증증환자는 질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것임
 - * 발급시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함

○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방법

제 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제출제외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한번만 제출
사용자 변경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이미 제출한 종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동 증명서를 반환받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가능

유의사항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유 의 사 항
기본공제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받음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장애인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한도 제한은 없으나, 총급여액의 3% 이상 사용제한은 받음)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	장애인(직계존속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의 15% 세액공제, 공제 한도 제한을 받지 않음 해당 장애인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특수교육비에 대해 공제 가능

17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님
-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 시기 및 방법

-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므로 연말정산 시 원천공제를 기준으로 공제시기를 판단함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대부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 가능

유의사항

- 2014년부터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변경됨
- 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됨

18 >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특별소득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경우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공제를 받는 것임

가.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 금액

구 분	공제금액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 액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 서류에 의해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제출할 필요 없음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 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 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공제함(소득세법 제52조 1항)

나. 주택자금공제

공제항목	공제비율	개별한도	통 합 한 도	
			연 300만원	연 300 ~ 1,8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연 300만원	연 300 ~ 1,8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00%	연 300~1,8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1.1. 이후 최초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기타 : 연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연 300만원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세대원이 공제 가능

-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을 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제외

구 분	배 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의 토지	5배
그 밖의 토지	10배

거주자와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 가능하나, 공제요건이 다르므로 유의해야함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 임대차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 ▶ 차입금이 금융회사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 차입한 자금의 이자율이 기준이자율 2.1%(’18.3.21~’19.3.19.까지는 1.8%, ’17.3.10.~’18.3.20.까지는 1.6%, ’16.3.16.~’17.3.9.까지는 1.8%, ’15.3.13.~’16.3.15.까지는 2.5%)보다 낮은 경우가 아닐 것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대출기관 등이 아닌 소속 회사인 일반법인, 각종 공제회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공제 대상자		<p>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p>※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p> <p>※ 1주택자가 새주택을 구입한 경우 구주택을 연말까지 양도</p>												
요건 ¹³⁾	주 택	<p>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18.12.31.이전 4억원, '13.12.31.이전 3억원)인 주택</p> <p>*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p>												
	차입금 ¹⁴⁾	<p>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시기금에서 차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¹⁵⁾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공제 제외		세대원 보유주택 포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1. 이후 차입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상환기간 15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td> <td>1,800만원</td> </tr> <tr> <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td> <td>1,500만원</td> </tr> <tr> <td>기타</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td> <td>3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2014년 차입분 : 500만원(다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13)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1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

15)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주택 양수인이 주택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내용

차입금 인정 요건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기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함)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주택양수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것 ('14년~'18년 차입 4억원 '13년 이전 차입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신규차입금의 경우 기존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 •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2.12~2010.2.11. 중에 최초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의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분양권 관련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구 분	내 용
공제대상자	무주택자인 세대주
주택분양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등 포함
가액요건	4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
가액	조합원 입주권 (청산금 납부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 수령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수령한 청산금
	그 외
차입금 요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 *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구 분	내 용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보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 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공제 제외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금 특례

- ▶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19 그 밖의 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별 소득공제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까지	2001.1.1.이후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저축불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소득 공제 등	불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공제비율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공제서류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납입확인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제공	
한도금액	연 72만원 한도 (불입액 기준 180만원 한도)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한 공제방법, 공제비율 및 공제한도가 다르므로 공제시 유의해야 함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중소기업중앙회 운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

- 폐업,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과세 (퇴직소득 = 공제금 -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하던 해지가산세는 폐지됨)

* '18.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17.12.31. 이전 해지 시 20% 기타소득세 부과)

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 중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

▶ (예외) '09.12.31.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포함

*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세 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임
세대주 판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기준시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봄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공제신청 방법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300만원

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조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20.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공제시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중 선택하는 1과세연도에 공제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17년 이전 투자 : 15백만원 이하 100%, 15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 퇴직의 경우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 출자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이전·회수·양도·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및 조합이 해산한 경우는 제외)

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 사용액 제외) 중 일정 비율을 공제

적용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p>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합계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액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공제금액 (2018년 연말정산 기준)	<p>□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①</td> <td>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td> </tr> <tr> <td>②</td> <td>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td> </tr> <tr> <td>③</td> <td>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td> </tr> <tr> <td>④</td> <td>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액 - ① - ② - ③) × 30%</td> </tr> <tr> <td>⑤</td> <td>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① - ② - ③ - ④) × 15%</td> </tr> <tr> <td>⑥</td> <td>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p> <p>i)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⑤ : 최저사용금액 × 15%</p> <p>ii) 최저사용금액 > ⑤ (총급여 7천만원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⑤ × 15% + (③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40% <p>iii) 최저사용금액 > ⑤ (총급여 7천만원 초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⑤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 15%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40% </td> </tr> </table>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액 - ① - ② - ③)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① - ② - ③ - ④) × 15%	⑥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p> <p>i)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⑤ : 최저사용금액 × 15%</p> <p>ii) 최저사용금액 > ⑤ (총급여 7천만원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⑤ × 15% + (③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40% <p>iii) 최저사용금액 > ⑤ (총급여 7천만원 초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⑤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 15%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40%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액 - ① - ② - ③)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① - ② - ③ - ④) × 15%												
⑥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p> <p>i)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⑤ : 최저사용금액 × 15%</p> <p>ii) 최저사용금액 > ⑤ (총급여 7천만원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⑤ × 15% + (③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40% <p>iii) 최저사용금액 > ⑤ (총급여 7천만원 초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⑤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 15%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40% 												
공제한도	<p>연간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자 연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 연간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p> <p>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의 합계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①, ②, ③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p>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는 사용 금액	<p>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포함) 												

○ 다음의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

-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 자동차 구입금액(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국가기관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등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 의료기관, 보건소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용역 중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및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
-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

-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유사한 대가
-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 ▶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선박면세점, 지정면세점)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또는 창업후 3년내 중소기업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

▶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당해 자사주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단, 당해 법인 또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 미만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 상당액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보유기간(의무예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에 따라 소득세 감면

보유기간	감면금액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 상당액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75% 상당액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 전액(100%)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해당 우리사주 인출일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소득공제 내용

- ▶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공제
- ▶ (근로자)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기 업	근 로 자
요 건	시간당 임금 유지요건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시간당 임금이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유지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인원이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상 시 근 로 자	임금총액 감소요건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인원산정방법	직전 또는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	
	1인당 시간당 임금	임금총액을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 (임금총액)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 (임금총액)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연도의 개월 수	
공제한도		-	연 1천만원
일몰기한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공제 요건

- ▶ (공제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신고대상자 및 일용근로자 제외)
- ▶ (공제대상 장기펀드)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펀드
- ▶ (소득공제액) 저축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배제

※ 2015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변경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구 분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 본 공 제	본 인	×	×	×	
	배 우 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18세 미만	○		
추 가 공 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부 녀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
	한 부 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 별 소 득 공 제	보 험 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	○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 별 세 액 공 제	보장성보험료	○	○	○	
	의료비	×	×	○	
	교육비	×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	○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13만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20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
 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
 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사 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920,000원 = 72만원 + (2,000만원 - 1,200만원) × 15%

21 > 세액감면

가. 정부간의 협약에 따른 감면

- 종합소득금액 중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
 -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

나.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의 강의(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소득세 감면(대부분 2년, 중국은 3년)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제외, 6년 한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일정한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2021.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2013.12.31. 이전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비율은 100%를 적용
 2014~2015년 취업(재취업 포함)한 청년 등의 경우 감면비율 50%를 적용
 2016년 이후 취업(재취업 포함)한 청년 등의 경우 70%(150만원 한도) 적용
 2018년 이후 청년이 수령하는 소득의 경우 90% 적용

- ▶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법규소득 2014-288, 2014.08.29.)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
 -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이하 “최대주주 등”)
 - ▶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관련 법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신청 절차
 - ▶ 근로자(감면신청서) → 중소기업(감면 대상 명세서) → 세무서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 가능(’19.1.1. 이후 신청분부터 가능)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2018 세법개정)

법조문	감면요건	당초	개정
조특법 제30조	감면대상기간	3년	5년
	감면율	70%	90%
조특령 제27조	대상 연령	15-29세	15-34세

※ 개정 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지 않도록 주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개정 연혁

개정일	감면 내용	대상자	일몰
'11.12.31.(신설)	3년간 100%	청년(15세~29세)	'13.12.31.
'14. 1.1.	3년간 50% 감면	청년(15세~29세) 60세 이상자, 장애인	'15.12.31.
'15.12.15.	3년간 70% 감면(한도 150만원)	청년(15세~29세) 60세 이상자, 장애인	'18.12.31.
'16.12.20.	3년간 70% 감면(한도150만원)	청년(15세~29세)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18.12.31.
'18.5.29.	3년간 70% 감면(한도150만원) ※ 청년 : 5년간 90% 감면 (한도 150만원)	청년(15세~34세)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18.12.31. ※ 청년 : '21.12.31.
'18.12.24.	3년간 70% 감면(한도150만원) ※ 청년 : 5년간 90% 감면 (한도 150만원)	청년(15세~34세)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21.12.31

참 고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홈택스(My Nts) 조회 서비스 추가
 - 근로자 : 2019. 1월부터 신청내역 조회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 : 2019. 4월부터 명세서 조회 가능

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을 감면
-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
 - ▶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달러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 독립된 연구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2 > 근로소득 · 자녀 ·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공제 한도(50만원~74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최저 5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text{근로소득세액공제액} \times (1 - \text{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나.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2019년부터는 7세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7세 미만의 취학 아동 포함)
 - ▶ 자녀 1명~2명 : 1명당 연 15만원
 - ▶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이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공제
 - ※ 2018년부터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2명 15만원, 3명 30만원) 폐지

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납입액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를 공제

*** 연금계좌의 종류**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text{연금계좌 납입액} = \text{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 \text{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인출금액}^* + \text{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 해당 연도 납입금 전환특례금액}^{**}$$

- *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인출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해당연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가능

사 례

2018년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여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9년 추가 납입없이 초과납입금 전환신청을 한 경우,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 200만원 = 600만원(전체 납입액) - 400만원(기 공제액)

23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기부금 제외)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
 - ▶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 (공제대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하며
 - ▶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함

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 액 공제율	제출서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12%	보험료납입증명서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받은자료 가능)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15%	

- 세액공제액 : 납입보험료 · 보증료 · 공제료 × 세액공제율
- (공제 가능한 보험료 확인방법)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 대상”,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됨

나.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배우자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
*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 ▶ (한도없음) 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난임시술비
- ▶ (연 700만원 한도) 그 밖의 부양가족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 치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세액공제 절차

- ▶ 근로자가 당해 연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의 “⑥본인 등 해당여부”와 “⑫난임 시술비 해당여부”란의 기재 내역에 따라 의료비지출금액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의료비 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구분 기재
- ▶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

○ 지출 항목별 의료비 공제 증빙서류

의료비 지출 항목	증빙서류	비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기관 및 약국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개별 지급내역 기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연간 지급내역 기재)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 교정 용임을 기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임의제출한 자료 제공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및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비영수증(의료용구명 기재)	

유의사항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간병인 지급비용 등

다.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대상 교육비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교육대상자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비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대학원 제외)에 지급한 교육비* □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 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 국외 소재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 교육법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¹⁶⁾에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1인당 한도	* 포함되는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초등학교 취학전 아동</td> <td>300만원</td> </tr> <tr> <td>초·중·고 대학생</td> <td>9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한도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300만원	초·중·고 대학생	90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td> <td>교과서대, 학교 급식비, 특별 활동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도서구입비 포함) 현장학습비 (30만원 이내)</td> </tr> <tr> <td>중·고</td> <td>교복구입비 (50만원 이내)</td> </tr> </tbody> </table>	대상	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과서대, 학교 급식비, 특별 활동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도서구입비 포함) 현장학습비 (30만원 이내)
구분	한도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300만원												
초·중·고 대학생	900만원												
대상	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과서대, 학교 급식비, 특별 활동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도서구입비 포함) 현장학습비 (30만원 이내)												
중·고	교복구입비 (50만원 이내)												
근로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에게 인정되는 교육비 (보육시설·학원 교육비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 대학(전공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의 교육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지급액은 제외) 	한도 없음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차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다음의 시설 등에 지급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만18세 미만) 	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 포함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16)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 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 교육비 세액공제 배제 금액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배제

- ▶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

구 분		증빙서류	비 고
국내교육기관 학생		교육비납입증명서	간소화제공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납입증명서	
국외근무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지출		교육비납입증명서	직접 영수증 발급
국내근무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지출		교육비납입증명서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	교육비납입증명서	간소화제공 (제출한 경우)
	학교 외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	교육비납입증명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		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 재활교육과정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직접 영수증 발급

라.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공제)

※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로 적용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구 분	내 용
기 부 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 본인 명의 기부금만 공제가능
기 부 처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

○ 세액공제 대상 한도

구 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
정치자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 30%) <p>*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p>

○ 기부금별 이월공제 적용기간

구 분	이월공제 적용기간
법정기부금	10년
지정기부금	10년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음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주요 유형

구 분	해당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금액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 법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에 지출한 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구 분	해당 기부금
지정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 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원격대학, 정부 인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정부 인가 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 단체 포함),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장학금 □ 불우이웃돕기,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영업자 조직단체의 특별회비, 임의 조직된 조합 등의 회비 □ 무료·실비 사회복지시설,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교원단체·공무원 직장협의회·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사망 등으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금액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기부금 공제 적용순서

-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 2013년 이전 기부금을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방법

- ▶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역을 기록한 기부금 명세서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은 모든 근로자를 작성

마.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이월분), 특별세액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함

유의사항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며,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24

월세액 세액공제

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주택자금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 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
 -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1995.11.1.~ 1997.12.31.까지의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97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 ▶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세액공제금액의 20%

나.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12%)를 공제
 -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연령·나이요건 충족)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한도 : 750만원(세액공제액 75만원 또는 90만원 한도)

25 > **농어촌특별세**

가. 과세대상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2016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전환

나. 과세표준

○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세액공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다. 세액의 계산 및 납부

○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20%)

○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액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

사 례

근로자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대상인 주택 용자금의 이자를 연간 1,500,000원 납입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았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 과세표준(세액공제액)	450,000원	=	1,500,000원 × 30%
농어촌특별세	90,000원	=	450,000원 × 20%(세율)

26 > 편리한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방법을 근로자에게 안내

- 대기업, 공무원 등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받으려는 회사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 활용이 곤란한 회사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수동작성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력하여 제출

가. 「편리한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근로자가 합리적인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사전에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
 - *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과 개인별 공제한도 안내,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추이 함께 제공
- 예상세액 자동계산
 - ▶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예상세액을 미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 부부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안내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요건에 맞는 공제항목을 확인·선택하면 그 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반영
- 간편 제출
 -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는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대상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 접근경로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로그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클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②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ID 신청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④ 「간편제출 바로가기」를 클릭 ⑤ 공인인증서로 인증

※ 부서사용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가 가능하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 등록 및 보내기가 불가하며 조회만 가능

▶ 근로자

홈택스 회원	홈택스 비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원 접속(인증서)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클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회원접속(인증서)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클릭

○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을 등록하여야 함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급여액을 입력하여야 함

- ▶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파일로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2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함

※ 회사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서식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잘못된 형식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 검증을 거쳐 업로드 해야 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입력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 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비고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함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분 프리필드 서비스	간편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함.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함.

*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지정한 근로자에게 제공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이 신청가능

- ▶ (2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총급여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 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구분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총급여
공제신고서만 작성	선택	선택
정확한 공제액과 세액계산	선택	필수
간편제출	필수(회사가 먼저 등록)	선택

* 총급여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등을 입력해야 함.

- ▶ (3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 (4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 ▶ (5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함
 - *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총급여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는 가능하나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총급여 등 자료를 입력해야 함.
 - *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등록된 총급여 등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 가능

○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위 절차 중 한가지만 해도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여 예상세액 자동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년 항목별 추이 확인 ◇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고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직접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2단계)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됨
- ▶ (3단계) 최근 3개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별 추이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제자료(기부금, 안경, 교복, 보청기 구입비 등)가 있는지 확인하여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반영하여야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반영한 공제금액이 세법상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을 꼭 확인하기 바람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이를 비교 하여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 ▶ (1단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 (2단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 (동의 절차)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료제공 동의
- ▶ (3단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음.

유의사항

-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가 불가함(다른소득으로 인한 세율구간 변동 등으로 세부담이 달라짐)
- 안내결과에 따라 절세를 위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동의를 추가로 하여야 하고,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도 직접 수정하여야 함(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정할 수 없음)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입력한 공제액 등을 기준으로 세액계산을 하므로, 총급여·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반드시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야 정확한 절세 효과가 계산될 수 있음

○ 간편제출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이용

-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 *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 ▶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제출을 통해 제출 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 ※ 회사에 자체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하는 절차

- ① 공제신고서 작성여부가 'Y', 소득명세 입력여부가 'Y', 처리상태가 '확인완료',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또는 '지급명세서 작성 실패'인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낼 수 있음
- ② 「지급명세서 중복여부 확인」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작성화면에서 작성 중인 근로자의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가 존재하는지 표시
- ③ 지급명세서 작성화면으로 전송할 근로자 자료를 체크
- ④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를 클릭하면 선택한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정보(회사 입력정보 포함)가 지급명세서 작성화면으로 전송
- ⑤ 전송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지급명세서 작성화면 이동」을 클릭하여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 퇴직등)지급명세서 →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

유의사항

-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공제를 받은 증명자료는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따로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선택한 1개 회사에 한하여 간편제출할 수 있음
*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 근로자는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최종분만 수록), 회사에서 최종 확정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음
-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반송 처리를 할 수 있음. 근로자는 반송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회사로 다시 간편제출하여야 함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및 자료제공동의 신청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5년간)하거나 파일 내려받기 가능
 - 자료제공동의 신청 : 조회자와 제공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제공자 본인인증으로 신청 완료되고, 조회자와 제공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첨부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전송
- 절세주머니
 - 총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항목에 대하여 공제 요건, 절세 Tip, 유의할 사항 등 연말정산 시 참고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3개년 신고내역 조회
 - 과거 3년간의 근로소득 관련 총급여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납부(환급)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과 기부금 명세서 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본인인증 필요)
-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 총급여액과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에 대한 임의의 값을 자유롭게 입력하고, 입력값에 따른 세액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 간소화 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하기
 -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조기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 제공(본인인증 필요)
- 대화형 자기검증
 - 주요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퇴직소득 원천징수 개요

종전 규정 방식 (15년 이전 퇴직) + 개정 규정 방식 (16년 이후 퇴직)

퇴 직 소 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 산출세액 ①

퇴직소득 산출세액 ②

2019년 : (퇴직소득 산출세액 ① × 20%) + (퇴직소득 산출세액 ② × 80%)
 · 종전 규정 방식에 대한 적용비율은'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 개정 규정 방식에 대한 적용비율은'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원천징수
 원칙 : 퇴직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
 예외 : 연금계좌 이체 등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

확정신고·납부
 (단,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면제)

1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음

구 분		내 용
퇴직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퇴직시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하고 사내보유현금으로 지급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사용자는 매년 기준책임 준비금의 80%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 •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급여의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사용자는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정산하고 종업원은 자기책임 하에 퇴직자산 운용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 급여의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제도 * 근로자 부담으로 연간 1천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IRP계정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2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함
- ※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함

사 례

1. 甲은 2000.1.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8.12.31.까지 15백만원(2002.1.1. 이후 13백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019.1.1. 반환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수령하였다. 반환일시금 이자 5백만원 중 2002.1.1. 이후 납입분에 대한 이자는 4백만원이다. 과세기준금액은 얼마인가?
 ☞ $\text{Min}(\text{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금 및 이자, 실제 수령한 일시금} - \text{과세기준일 이전 납입금})$
 $= \text{Min}(17,000,000\text{원}, 20,000,000\text{원} - 2,000,000\text{원}) = 17,000,000\text{원}$
2. 丙은 1998.1.1. 군인연금에 가입하여 2018.12.31.까지 4천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019.1.1. 일시금으로 6천만원을 수령하였다. 과세기준금액은 얼마인가?
 ☞ $\text{과세기준금액} = \text{해당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times \text{과세기준일}(2002.1.1.) \text{ 이후 기여금납입월수} / \text{총 기여금 납입월수}$
 $= 60,000,000\text{원} \times 204 / 252 = 48,571,428\text{원}$

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 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16년 이후 시행)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 *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또는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개월 이상인 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 이 경우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로 함

$$\text{퇴직소득} = \text{공제금} - \text{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2016.1.1.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에 따르나 2016.1.1.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라.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 2013. 2. 15.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3 세법상 퇴직판정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
 으로 봄

가.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판정의 특례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를 두고 있음

-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금 미수령 시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진출
 - ▶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진출(2015. 2. 3. 이후 진출하는 경우 부터 적용)
 -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계속근로기간 중 미리 퇴직금 수령하여 퇴직으로 보는 경우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아래의 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1항)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2015.7.6.):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2015년까지만 적용)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나. 법인세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사유

-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함
 -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 ▶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
 - ▶ 근퇴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정산(2015년까지만 적용)
 - ▶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

4 > 퇴직소득 수입시기

- 원칙 : 퇴직한 날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로 함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 ▶ 舊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사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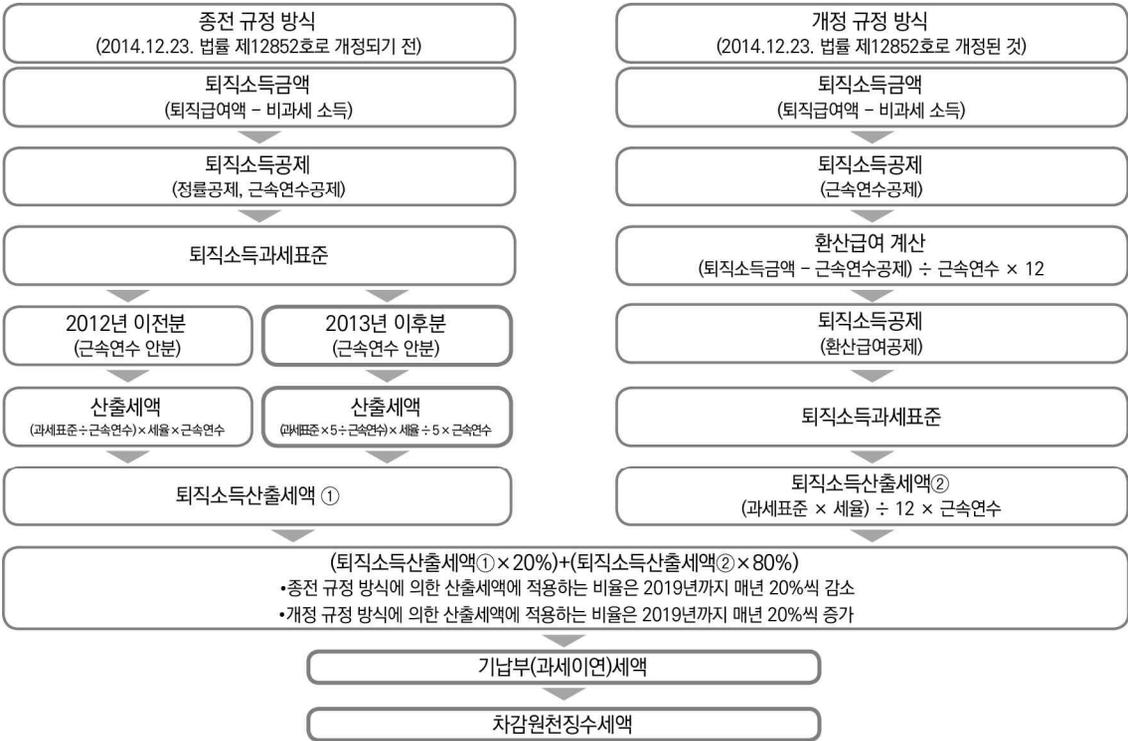
- 퇴직일 2018.12.31., 퇴직소득 지급일 2019.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 : 2018년 귀속에 해당
- 중간정산 시점 2018.12.31.,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2019.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 : 2019년 귀속에 해당

사 례

-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 등(소득세 집행기준 22-50-3)
 -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는 날)'임
 -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차 이후 지급분을 1차 지급일과 동일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 재정산 퇴직금을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 (원천세과-766, 2009.09.18.)
 - 성과급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함

5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2016년 이후 적용)



■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 세액계산 구조 비교 ■

종전 규정 방식(2015년 이전 퇴직)	개정 규정 방식(2016년 이후 퇴직)																																																																							
<p>● 퇴직급여액</p> <p>●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p> <p>● 퇴직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 × 40%) 근속연수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근속연수</th> <th>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년 이하</td> <td>근속연수 × 30만원</td> </tr> <tr> <td>10년 이하</td> <td>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td> </tr> <tr> <td>20년 이하</td> <td>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td> </tr> <tr> <td>20년 초과</td> <td>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td> </tr> </tbody> </table> <p>●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p> <p>●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㉗ + ㉘</p> <p>*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안분</p> <p>㉗ 2012년 이전분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p> <p>㉘ 2013년 이후분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세율 ÷ 5 × 근속연수</p> <p style="text-align: center;">〈기본세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h>누진공제</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d>-</td> </tr> <tr> <td>4,600만원 이하</td> <td>15%</td> <td>1,080,000원</td> </tr> <tr> <td>8,800만원 이하</td> <td>24%</td> <td>5,220,000원</td> </tr> <tr> <td>15,000만원 이하</td> <td>35%</td> <td>14,900,000원</td> </tr> <tr> <td>30,000만원 이하</td> <td>38%</td> <td>19,400,000원</td> </tr> <tr> <td>50,000만원 이하</td> <td>40%</td> <td>25,400,000원</td> </tr> <tr> <td>50,000만원 초과</td> <td>42%</td> <td>35,400,000원</td> </tr> </tbody> </table>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원	<p>퇴직급여액</p> <p>● 퇴직소득금액(㉗)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p> <p>● 근속연수공제(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근속연수</th> <th>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년 이하</td> <td>근속연수 × 30만원</td> </tr> <tr> <td>10년 이하</td> <td>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td> </tr> <tr> <td>20년 이하</td> <td>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td> </tr> <tr> <td>20년 초과</td> <td>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td> </tr> </tbody> </table> <p>* 정률공제(40%) 폐지</p> <p>● 환산급여(㉙) = (㉗ - ㉘) ÷ 근속연수 × 12</p> <p>●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p> <p style="text-align: center;">〈환산급여공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환산급여</th> <th>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8백만원 이하</td> <td>전액 공제</td> </tr> <tr> <td>7천만원 이하</td> <td>8백만원 + (㉙ - 8백만원) × 60%</td> </tr> <tr> <td>1억원 이하</td> <td>4천520만원 + (㉙ - 7천만원) × 55%</td> </tr> <tr> <td>3억원 이하</td> <td>6천170만원 + (㉙ - 1억원) × 45%</td> </tr> <tr> <td>3억원 초과</td> <td>1억5천170만원 + (㉙ - 3억원) × 35%</td> </tr> </tbody> </table> <p>● 퇴직소득산출세액(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p> <p>●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① × 적용비용) + (② × 적용비용)</p> <p>① 종전규정(2015년) 산출세액 ② 개정규정(2016년) 산출세액</p> <p style="text-align: center;">〈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2016년</th> <th>2017년</th> <th>2018년</th> <th>2019년</th> </tr> </thead> <tbody> <tr> <td>종전방식 산출세액</td> <td>80%</td> <td>60%</td> <td>40%</td> <td>20%</td> </tr> <tr> <td>개정방식 산출세액</td> <td>20%</td> <td>40%</td> <td>60%</td> <td>80%</td> </tr> </tbody> </table>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㉙ - 8백만원) ×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㉙ - 7천만원) ×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㉙ - 1억원) ×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㉙ - 3억원) × 35%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원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㉙ - 8백만원) × 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㉙ - 7천만원) × 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㉙ - 1억원) ×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㉙ - 3억원) × 35%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 (왼쪽 상단의 배너에서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 홈택스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사 례

중간지급을 합산하고 퇴직금 중 **일부만 과세이연**한 경우('19년 퇴직)
 홍길동씨는 (주)국세에 2003.01.01 입사하였고 2019.03.28 퇴사하였음.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5천만원 중 2천만원만 2019.04.01. IRP계좌로 이체.**

계산내역

① 종전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8,504,466

퇴직소득금액	188,000,000	(138,000,000 + 50,000,000)
(-) 퇴직소득공제	84,800,000	
정률공제	75,200,000	= 188,000,000 × 40%
근속연수공제	9,600,000	= 400만원 + 80만원(17년 - 1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103,200,000	

	2012년 이전 근무	2013년 이후 근무	합 계
과세표준 안분	60,705,882 (103,200,000 × 10/17)	42,494,118 (103,200,000 - 60,705,882)	103,200,000
(÷) 근속연수	10년	7년	
(=) 연평균과세표준	6,070,588		
(=)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30,352,940	
(×) 세율	6%	15%	
(=) 연평균산출세액	364,235	3,472,941	
(×) 근속연수	10년		
÷ 5 × 근속연수		÷ 5 × 7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3,642,350	4,862,116	8,504,466

② 개정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10,475,799

퇴직소득금액	188,000,000	= (138,000,000 + 50,000,000)
(-) 퇴직소득공제	8,000,000	
근속연수공제	9,600,000	= 400만원 + 80만원(17년 - 10년)
(=) 환산급여	125,929,411	= (188,000,000 - 9,600,000) ÷ 17년 × 12
(-) 환산급여공제	73,368,234	= 61,700,000 + (125,929,411 - 100,000,000) ×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52,561,177	
(×) 세율	24%	
(=) 환산산출세액	7,394,682	
÷ 12 × 근속연수	÷ 12 × 17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10,475,799	

③ 차감원천징수세액 : 3,636,920원

특례적용산출세액*	10,081,532	(①8,504,466 × 20%) + (②10,475,799 × 80%)
(-) 기납부세액	4,020,000	
(=) 차감납부세액	6,061,532	
(-) 이연퇴직소득세	2,424,612	= 6,061,532 × (20,000,000 ÷ 50,000,000)
(=) 차감원천징수세액	3,636,920	

* (2019년 특례적용 산출세액 비율) 종전 : 개정 = 20% : 80%

6 > 퇴직소득 세액정산

- (정산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은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하고, 이 경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함(2016.2.17개정)
 - ▶ (정산 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

사 례

- 입사일 '15.1.1., 중간정산지급일 '18.12.31., 퇴사일 '19.3.31.
 - 중간정산 지급시 근속연수 : 48개월('15.1.1.~'18.12.31., 4년)
 - 최종 퇴직시 근속연수 : 51개월('15.1.1.~'19.3.31., 5년)
 - 정산 근속연수 : 48개월 + 51개월 - 중복월수 48개월 = 51개월(5년)

7 > 퇴직소득세의 이연

- 가.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46조 2항)
-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 경우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

나.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이연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연퇴직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함

$$\text{이연퇴직소득세} =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text{퇴직소득금액}}$$

○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연금계좌취급자)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text{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 \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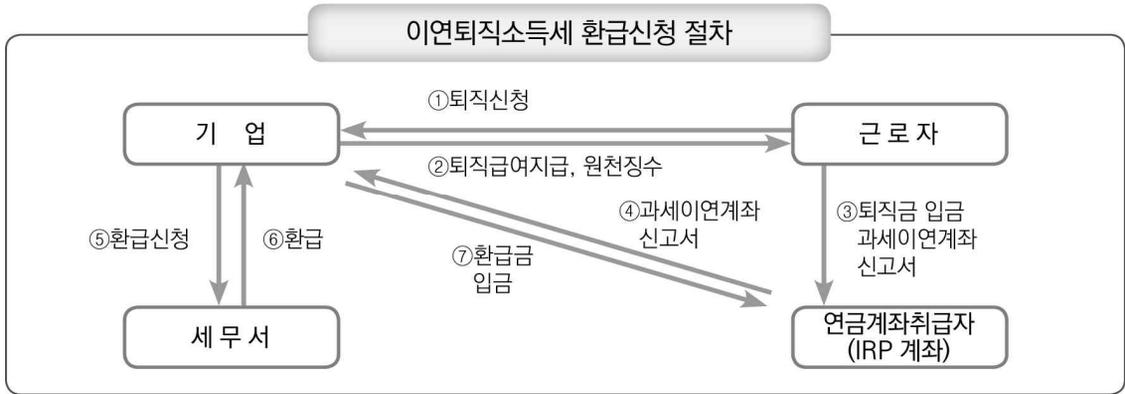
다. 연금계좌취급자 통보(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6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

통보시 주의할 사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 제출시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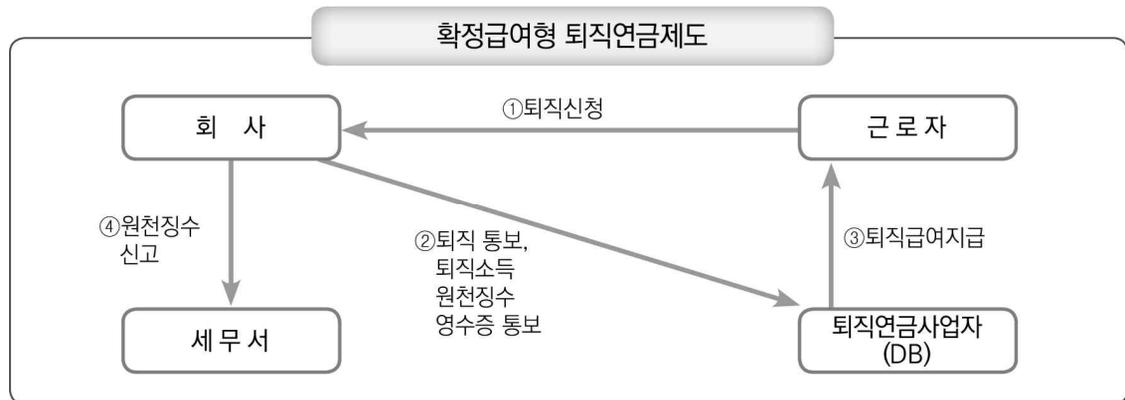
라. 퇴직소득세 환급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3)



8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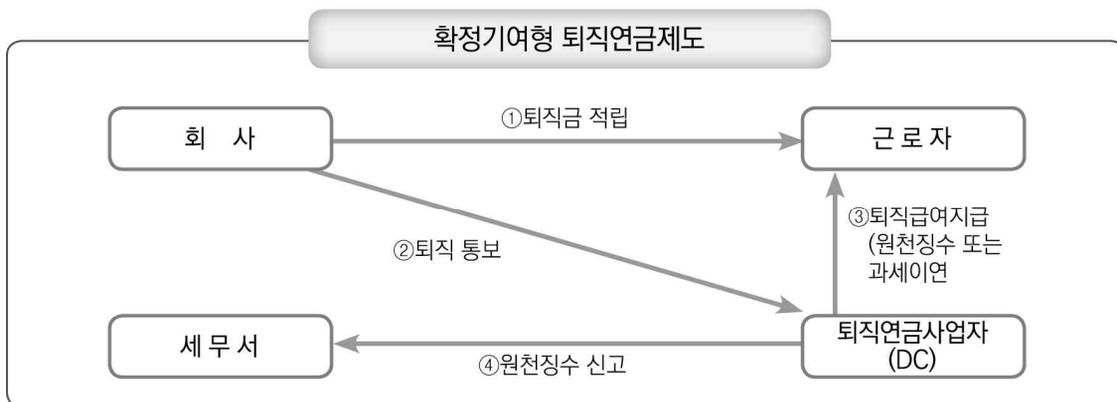
가.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 적립금과 운용수의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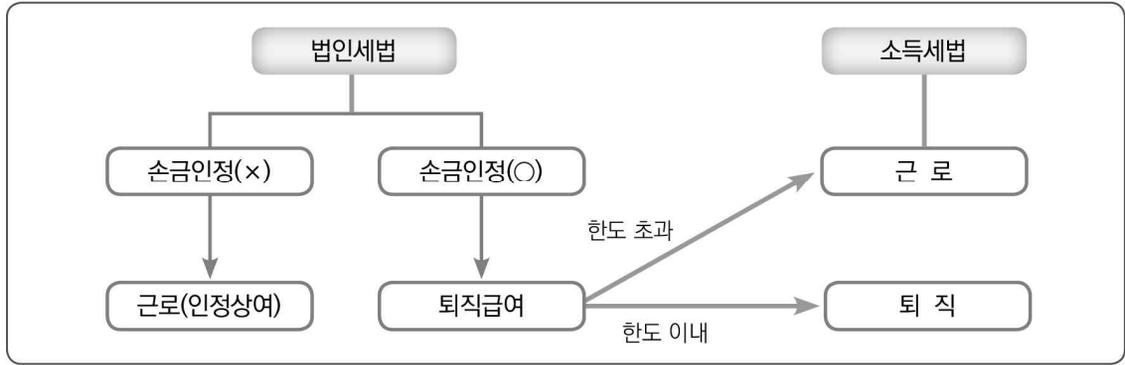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

다만, 원천징수시기 이연(소득세법 제146 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

다.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세법 제147조)

-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9 임원 퇴직소득금액



○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 ※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
- ▶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

$$\text{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text{1년간 총급여액}^* \times 1/10 \times \text{근속연수}^{**}$$

* 총급여액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 근속연수 : 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소득세법 제22조 3항)

$$\begin{array}{l} \text{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 \text{3년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동안} \\ \text{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end{array} \times \frac{1}{10} \times \frac{\text{2012년 1월 1일} \\ \text{이후의 근무기간(月)}}{12} \times 3$$

※ 근무기간 : 개월 수로 계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로 봄)
 총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을 합산

-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계산
-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

사 례

○ 2018.12.31. 퇴직한 임원, 2012년 이후 근무기간 월수 8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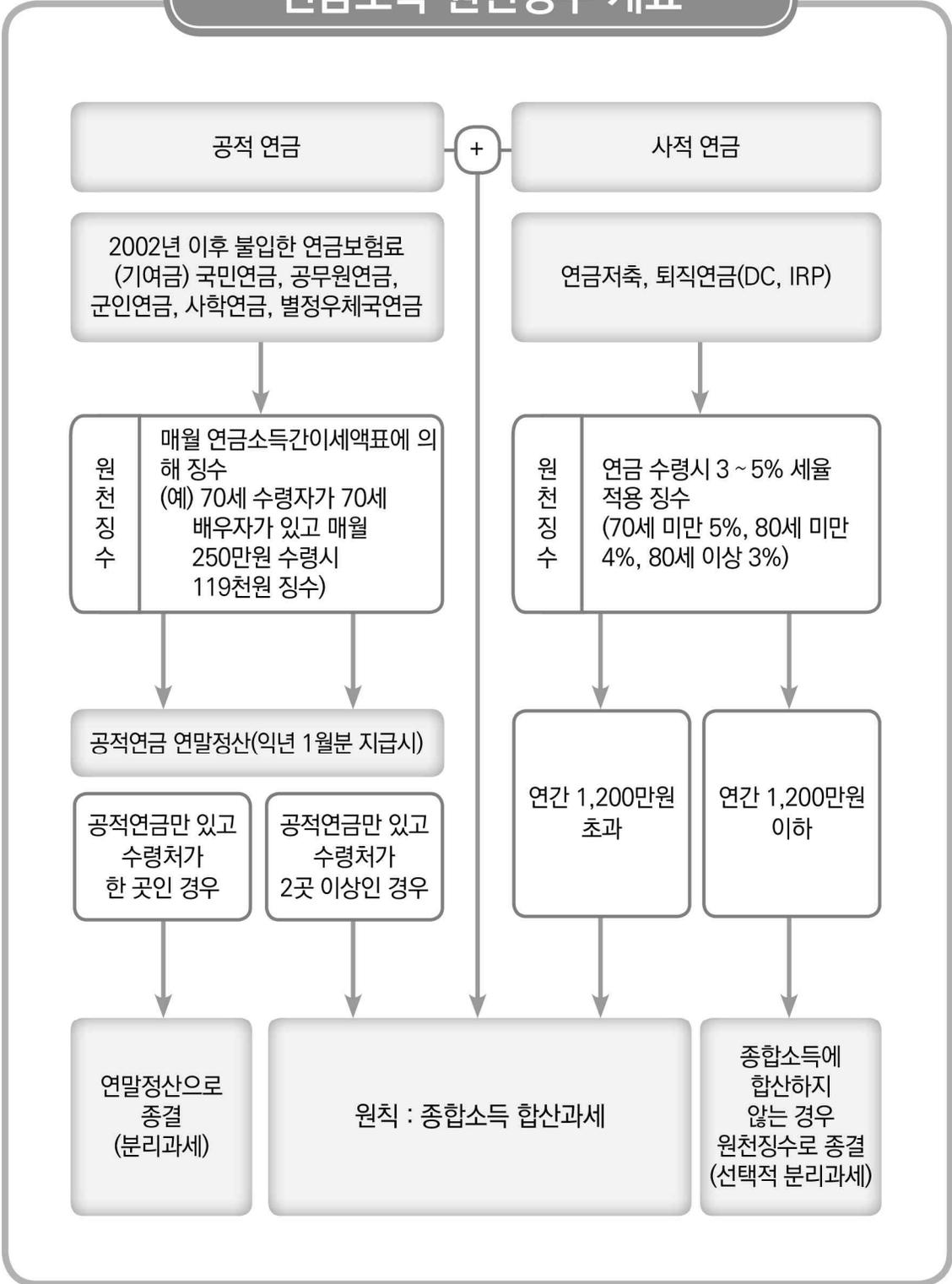
- 퇴직소득금액 3,500백만원, '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 1,500백만원(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400백만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 ①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계산 : 2,000백만원
 퇴직소득금액(3,500백만원) - '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1,500백만원)

☞ ②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 840백만원
 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400백만원) / 10 × '12년이후근무월수(84) / 12 × 3

☞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 : 1,160백만원 = ① 2,000백만원 - ② 840백만원

연금소득 원천징수 개요



1 연금소득의 범위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 (공적연금소득)

-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 ▶ (과세기준일)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포함

나.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 연금계좌 종류
 -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 ▶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 연금계좌 납입요건
 - ▶ 연간 1,800만원 이내 금액 납입,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액으로 함
해당 과세기간 이전 연금보험료는 납입 불가하지만 보험계약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년 2개월 경과 전에는 그 동안의 보험료를 납입 가능
 -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함
-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③항)
 -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적용 제외
- ▶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여야 함.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 연금수령 한도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4조 3항)

- ▶ (의료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시,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

○ 연금수령 연차

- ▶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예외적인 사유로 기산 연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산연차를 적용)

※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4항)

예외적인 사유	기산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 	6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소득세법 제44조2항)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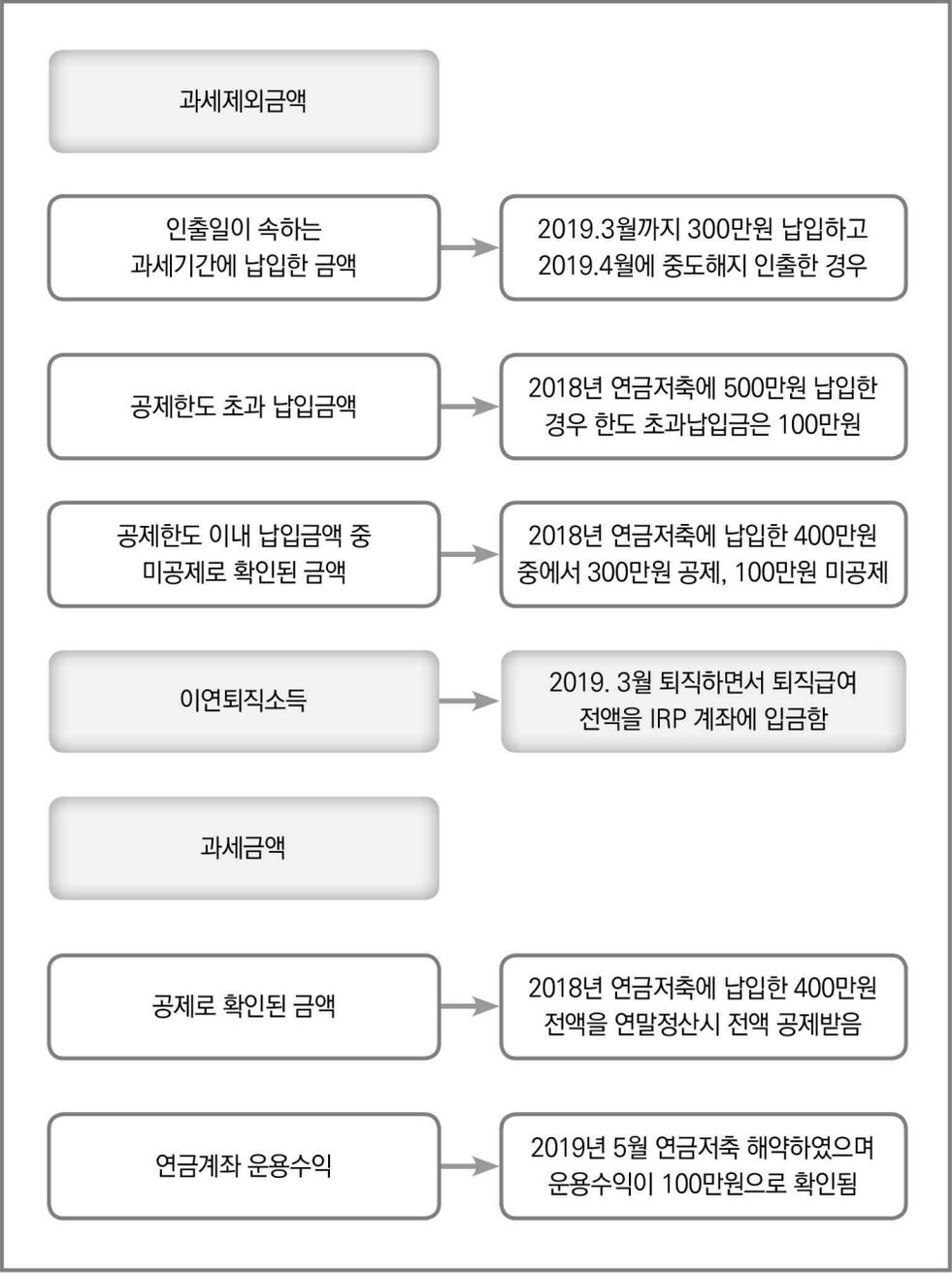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연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 과세)
- ▶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연금계좌 인출순서

연금계좌 구성	유형별 사례
---------	--------

연금계좌 인출순서



○ 연금계좌 이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이체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1항)

-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구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다만,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간 이체시 인출로 보지 않음(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연금수령 개시된 경우 포함
- ▶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함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제외
- ▶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계좌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 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 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

○ 연금계좌 승계

- ▶ 연금계좌는 배우자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음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소득세법 제44조)
- ▶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날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함. 다만, 연금수령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인출)의 판단시 피상속인의 가입일을 적용
 * (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인출세액을 정산

- ▶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망일 현재 다음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함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 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 신청기한의 말일, 상속인이 신청기한 전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날)

2 ▶ 비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 퇴직유족연금
 -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3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함

구 분	수 입 시 기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4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가. 공적연금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함
 -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 (제출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
 -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시에는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 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나.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구	분	세 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4%
*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	

■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2015년~2019년) ■

○ 연금수령의 경우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연금 저축 계좌 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다목)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분리과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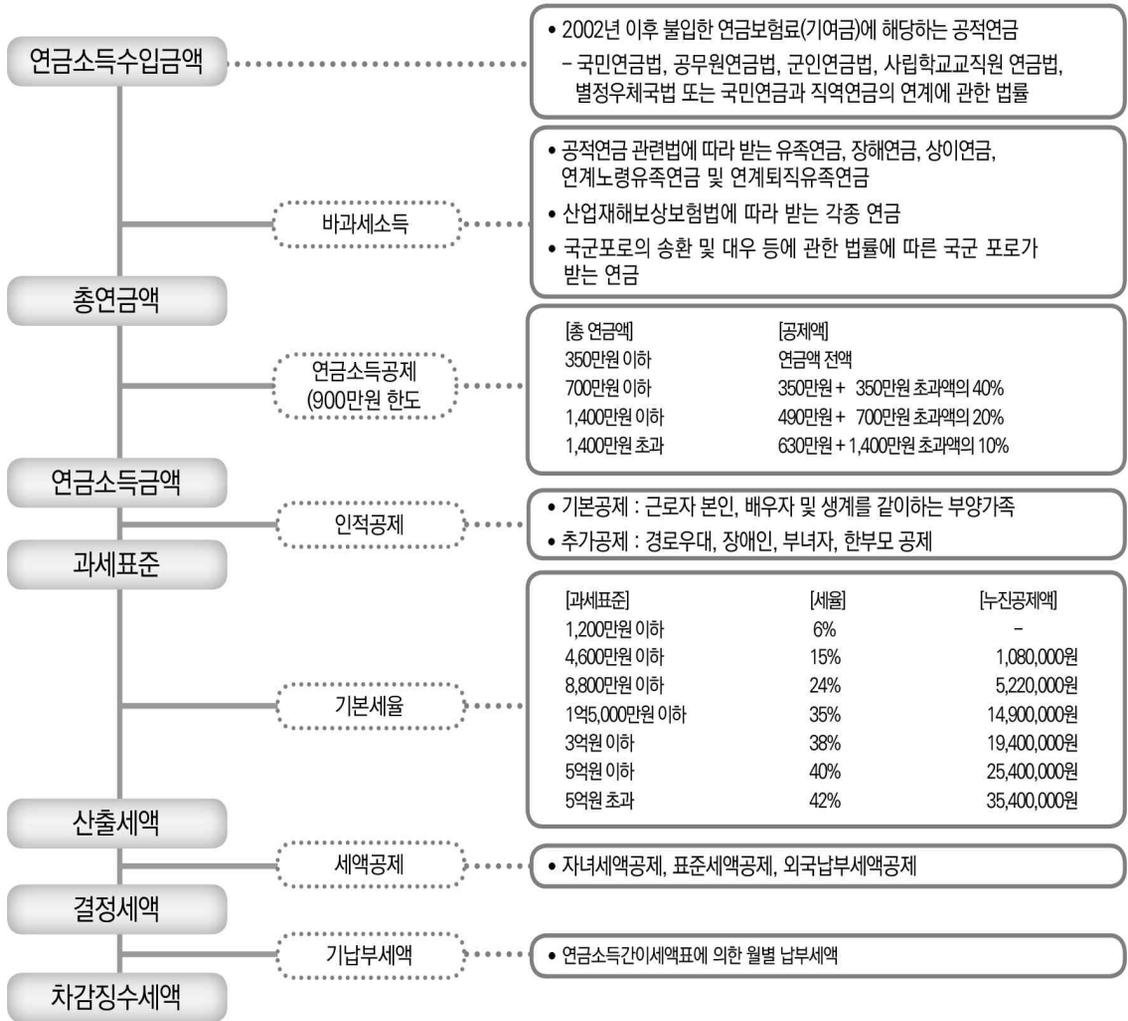
**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경우, ②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 시 연금소득(3~5%) 과세, ③ ①·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외수령의 경우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퇴직소득	분류과세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연금 저축 계좌 원천	기타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15%

*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



5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text{연금소득금액} = \text{총연금액}^* - \text{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가.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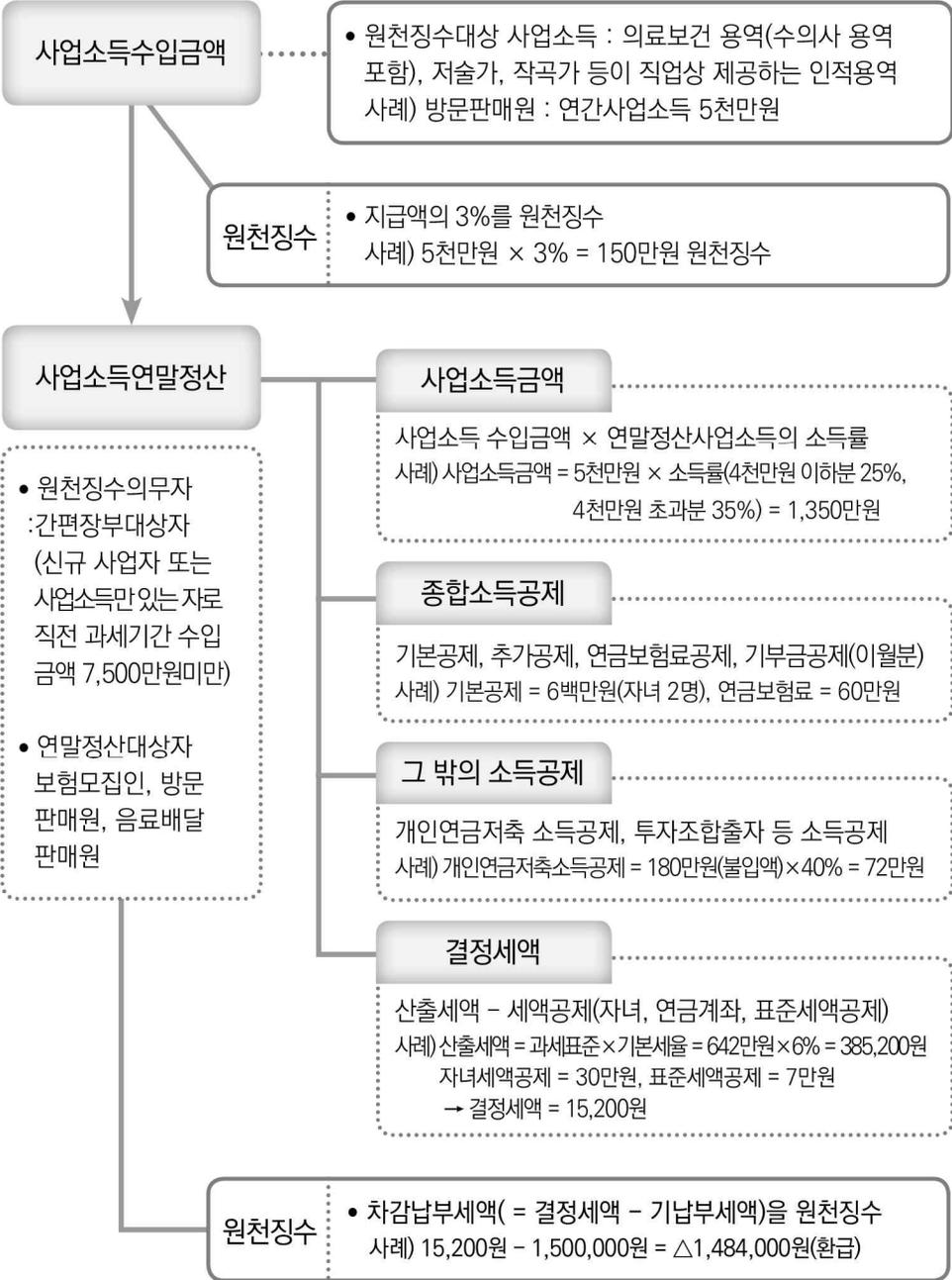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공제한도 : 200만원)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함
 - ▶ (공제방법)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구 분	계 산 방 법
총연금액	연금수령액(=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한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등(200만원 한도,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 ※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함
- ①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②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 ③ ①, ②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선택적 분리과세)

사업소득 원천징수 개요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 원천징수 대상 의료보건 용역 범위(수의사의 용역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 이송 용역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 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 관리 용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 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모자보건법 제2조 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2) 의료보건용역중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

-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text{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 = \text{요양급여비용} \times \frac{\text{의약품의 구입비용}}{\text{약제비총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 급여비용

사 례

-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과-427, 2016.02.12)
 - 의료보건 용역 중 약사법에 의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며, 이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임

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나 접대부, 댄서 및 유사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봉사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조건 훈련 용역
-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사 례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서면1팀-527, 2006.4.26.)
-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소득-256, 2008.7.28.)
-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임(조심 2009부218, 2009.3.5.)
-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법규소득 2014-185, 2014.6.30.)

2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 ▶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

- 특수직 종사자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로, 캐디, 간병인 등이 해당
-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중개자는 매년 2월말까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3 >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할 세액
 -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을 원천징수

사 례

- A보험모집인의 2019.5월 사업소득 금액이 5,000,000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은 얼마인가?
 ☞ 150,000원 = 5,000,000원 × 3/100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
-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5 사업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
 -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음료배달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방법

-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사 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10,530\text{천원} = \{40,000\text{천원} - (40,000\text{천원} \times 77.6\%)\} + \{5,000\text{천원} - (5,000\text{천원} \times 68.6\%)\}$
 <보험모집인 단순경비율> 기본율 77.6%, 초과율 68.6%(4천만원 초과분 적용)

○ 연말정산 시기

-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때

○ 종합소득공제 등

- ▶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
- ▶ 다만,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
- ▶ 소득·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세 계산

$$\text{종합소득과세표준} =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 \text{그 밖의 소득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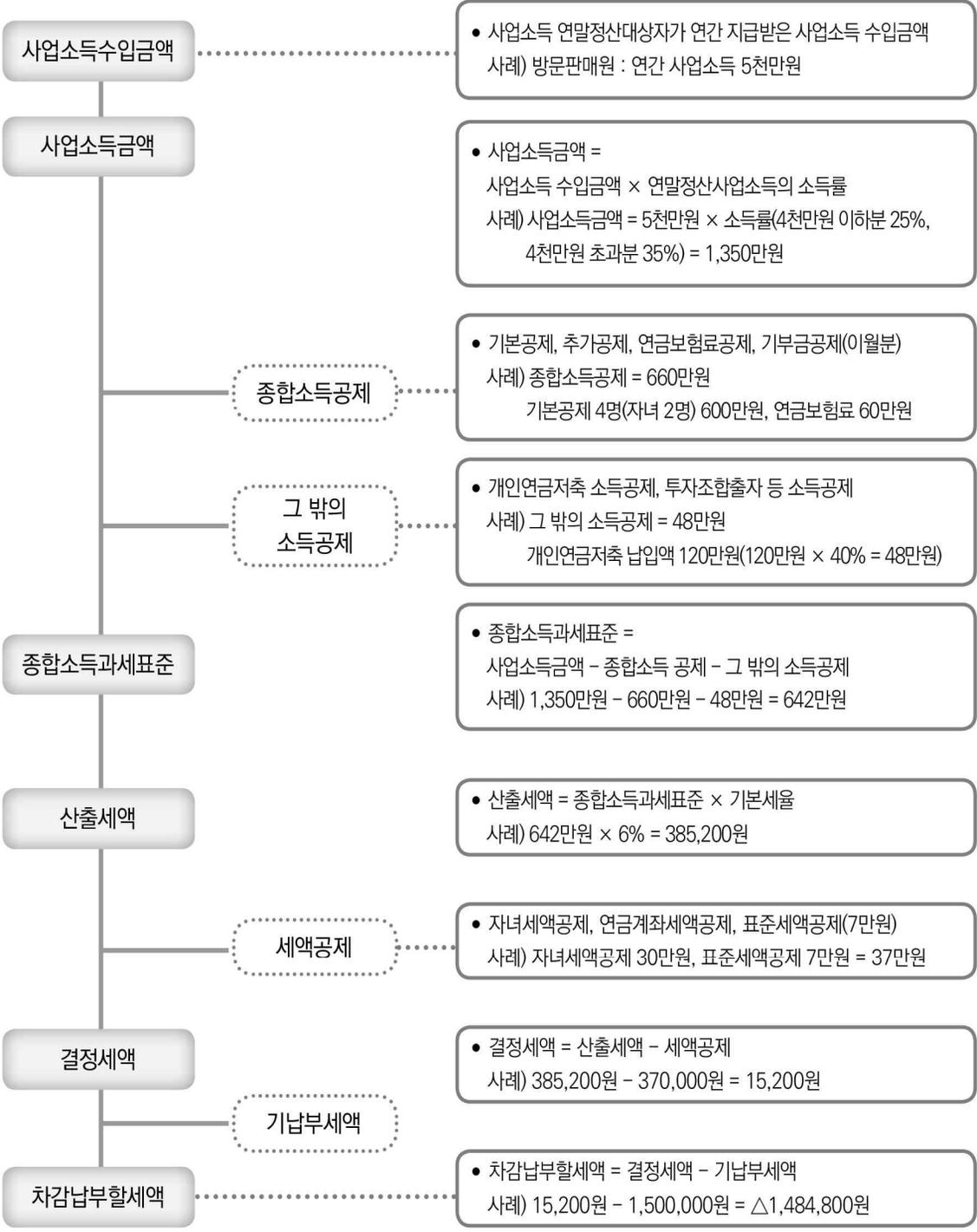
-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
 -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
-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
- ▶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

사 례

A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200만원이고, 2019.2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150만원, 2019.3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500만원인 경우

☞ 2019.2월 150만원 징수, 2019.3월 50만원 징수

사업소득 연말정산 계산 절차 및 사례



기타소득 원천징수 개요

종류	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 양도 등의 대가	보상금 위약금	인적용역 소득	서화 골동품	종교인 소득
----	----	-----------	----------------	------------	------------	-----------	-----------

(-)

필요경비	실제 소요된 경비	받은 금액의 60%(80%,90%) (소요경비가 큰 경우 소요경비)
------	-----------	--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은 필요경비 60%, 종교인소득은 필요 경비 20% ~ 80%

(x)

원천징수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② 복권 당첨금 등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분 : 30% ③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과세분 : 15% ④ 종교인소득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

(=)

원천징수세액	과세 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연금외수령 제외)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일정 요건의 환급금
--------	---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 여부>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합산 여부 선택 가능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당첨금, 서화·골동품 양도,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등 → 원천징수로 종결

(무조건 종합과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 뇌물, 알선수재 금품 등

1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구 분	과 세 대 상
상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¹⁷⁾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17)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구 분	과 세 대 상
인적용역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서화·골동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종교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2 > 비과세 기타소득

구 분	비과세 기타소득
보훈급여금 정착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상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일정 요건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1인당 15만원 이내)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 공무원수당 □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직무발명 보상금	<p>다음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 이하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과 고용관계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위로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업무 관련 교육을 위하여 받는 입학금 등) □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3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원칙)대가를 지급받은 날
-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

유 형	수입시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거주자가 사업소득(일부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 확정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4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 ▶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2018.1.1.부터 시행)
 - ▶ (매월 원천징수) 매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 (연말정산)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
 - ▶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5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의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사 례

- '19. 4월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 ☞ 기타소득금액 : 50,000원
 $50,000원 = 125,000(기타소득\ 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 ☞ 원천징수세액 : 0원
 (∵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소득세법 제37조)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 ▶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 ▶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취지)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주차장 등)를 대여하고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부담·신고부담을 완화
(연 500만원 초과시 : 전액 사업소득으로 과세)

-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 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종교 관련 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20%)

사 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8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7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유 형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15%
○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 적용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8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원천징수된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
- ▶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 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 무조건 종합과세
-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9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
- ▶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하지 아니함
- ▶ 원고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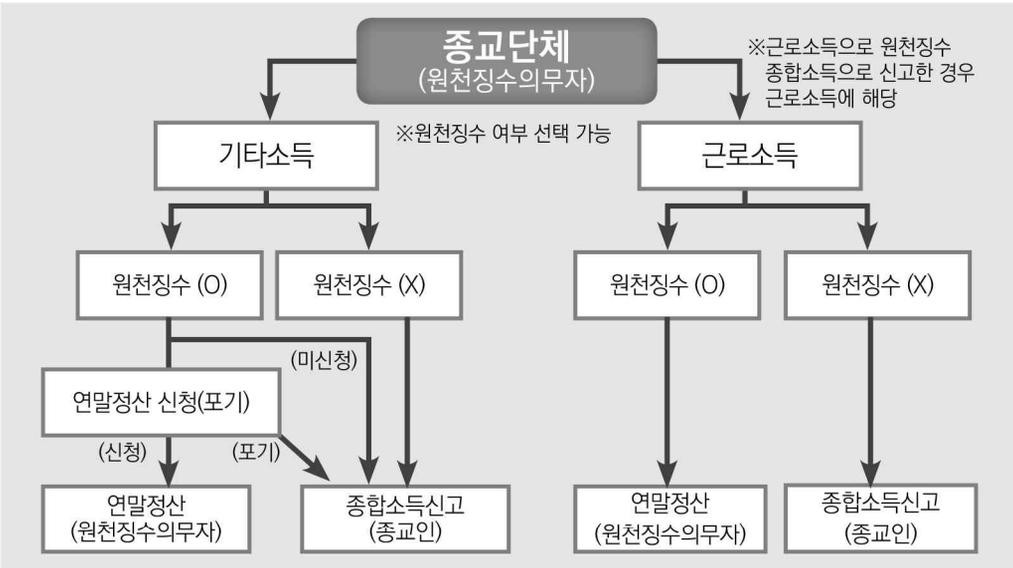
-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

유의사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원고료

-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지급받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에 산입
원고료 125,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10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지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개요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매월(반기별)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정산

- 종교인 소득 = 연간 종교인 소득 - 비과세소득
- (-) 필요경비

종교인 소득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 20%
- 종교인 소득금액
- (-) 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 출자 등)
- 과세표준
-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자녀, 연금계좌,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종교인소득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차감 납부할세액: 추가납부 또는 환급

제10장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1 종교인소득

○ 개념

- ▶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26호)

○ 소득의 분류

가.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됨

-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법령에 비과세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1) 학자금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함

Tip : 자녀 학자금

자녀 학자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 경우 학교에는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 ③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2) 식사 또는 식사대
- 종교인이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② ①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①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②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이 경우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③ 종교활동비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구분
 - ④ 종교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5) 사택제공이익
-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

2 > 종교관련종사자

○ 개념

- ▶ 종교관련종사자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

○ 구분

-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교관련종사자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으로 구분되며 그 업무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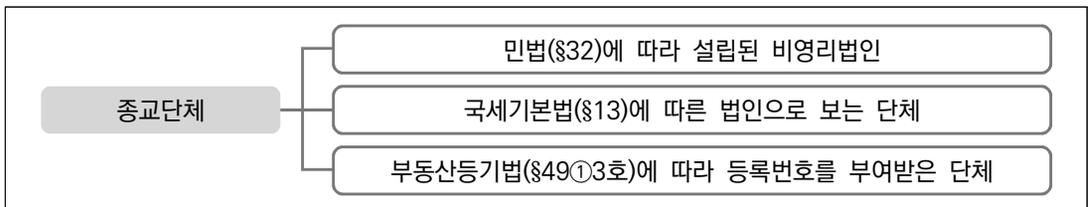
구 분	업 무
○ 종교관련종사자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성직자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

3 > 종교단체

○ 개념

- ▶ 종교단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하며,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를 말함

■ 종교단체 범위 ■



- ▶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

- ▶ 국세기본법(§13)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종교단체 소재지의 세무서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체 승인을 신청(그 소속 단체를 포함)
 - ① 종교단체 정관 또는 규정
 - ② 소속증명서
 - ③ 대표자 증명
 - ④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 ▶ 부동산등기법(§49①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종교 단체를 의미(그 소속 단체를 포함)

4 ▶ 종교인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봄(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종교인소득 중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구분

질문 종교단체가 은퇴한 종교인에게 생활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 종교인소득에 해당 하는지요

답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 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5 >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매월(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다음 해 2월 소득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 상시고용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반기별납부 신청 가능

구 분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과세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 공제	종교인이 받은금액	필요경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2천만원 이하	80%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액의 5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예) 수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900만원 필요경비 인정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좌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	(좌동, 표준공제는 13만원) + 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능	수급 가능		

-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①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③ 소득금액(① - ②)				
④ 소득 공제	인적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⑤ 과세표준(③ - ④)				
⑥ (×) 세율(6~42%)				
⑦ 산출세액(⑤×⑥)				
⑧ 세액 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	○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700 한도))		○	○
	특별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 한도)	×	○
		기부금(금액별 100/110, 15%, 25%, 30%)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 (7만원)	○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 등	○	○	
⑨ 결정세액(⑦ - ⑧)				
⑩ 기납부세액				
⑪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⑨ - ⑩)				

6 >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 종교인소득 지급액은 종교인이 해당 과세기간(예 : '19년 1월 ~ 12월)에 받은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함
-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됨
 - ▶ 다만, 소요된 필요경비가 아래의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

종교인이 받는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 20%

계산예시

- ① 종교인소득 지급액이 2천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16백만원 (= 2천만원 × 80%)
- ② 종교인소득 지급액이 3천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21백만원 (= 16백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50%)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지출증빙 필요)가 위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7 >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구분기장이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것

종교단체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분 기장한 경우,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서류는 조사대상이 아님

○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종교단체의 수입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서 관련 세금을 신고하여야 함

- ▶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가 과세됨

○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과세대상(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교인 또는 종교인이 아닌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원천징수)에 해당

- ▶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구분
- ▶ 종교인이 아닌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
- ▶ 종교단체가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종교인이나 종사직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원천징수)이 아님

○ 종교단체의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 기록방법

-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지출금액)을 아래와 같이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것(종교인소득)
-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근로소득 등)
- 위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 등(유지비용 등)

종교단체의 지출(소요 비용)	소득 귀속
①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것	→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으로 귀속
- 종교인에게 종교 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종교활동비)	→ 법령에 따라 지출한 경우 비과세
② 종사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	→ 종사직원의 근로소득 등으로 귀속
③ 종교시설 유지 또는 증축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보수비 등)	→ 과세 대상 아님

-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 귀속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교 활동 비용에 대해 귀속자별로 아래와 같이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
-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비용 중 종교인소득, 종사직원 근로소득, 특정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고 행사비용 등과 같이 종교의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구분하여 기록
-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른 회계 처리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별도 계정에 의해 분리
- 종교인 회계를 구분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귀속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대상 종교인소득을 분리

▶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관리하는 방법

- 종교인소득 계정은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만을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기록하고, 종교인이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종교단체의 회계처리규정에 의해 사용범위가 확정되어야 함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사용여부, 지출처, 사용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종교인소득 계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종교인소득 계정은 종교인별로 세부 지급명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 각 종교계별 회계처리 규칙 등에 의해 작성된 장부를 토대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종교인소득 계정으로 처리
-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계정에 대하여 과세·비과세로 분류하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

▶ 종교인회계를 별도 기록하는 방법

- 종교단체 회계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전반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지출에는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지출을 포함하여 기록
- 종교인회계는 종교단체의 지출 중 종교인을 통해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것으로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파악하는 데 편리

▶ 종교활동 비용에 대한 관리 방법

- 종교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종교 활동 비용은 사용시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함

- 각 종교계별 회계처리 규칙 등에 의해 작성된 장부를 토대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종교인회계로 구분하여 처리
- 종교단체는 종교인회계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비과세·과세 제외로 분류하고 과세대상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질문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종교단체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종교단체가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과세와 별개로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Tip :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비용 관리 사례

- ① 종교활동 비용은 종교단체의 고유활동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는 구분됩니다.
- ② 종교활동 비용은 종교인의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내부 결정기관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지출은 종교단체 명의의 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종교활동 비용을 지출한 종교인은 매월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사용 내역서에 사용 용도를 기재하여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 ⑤ 종교단체 명의의 카드를 개인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개인 용도로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종교단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⑥ 종교인이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종교활동 비용을 사용한 경우 카드 전표에 사용목적과 내역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종교단체에 제출합니다.
- ⑦ 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지출의 경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와 지출 일시 및 내역을 기재한 내부영수증을 작성한 후 종교단체에 제출하고 종교단체는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종교단체와 종교인소득과의 관계 ■

구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종교단체의 구분 기록·관리		비고
		수입	비용	
고유 목적 사업	과세 대상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세무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활동 비용 종교시설 유지비용 종교시설 증축비용 종교시설 관련 공과금 및 재산세 등 	☞ 과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원천징수 선택 가능)
수익 사업	과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보수 매출(서비스)원가 인건비 부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종교단체에 대해 과세

8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 시기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종교인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함
-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소득 선택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음
-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이행 상황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말함
- ▶ 종교단체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의 경우 1월10일,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없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세액 납부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일(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에 납부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종교단체는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교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교부하고 소득을 지급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 ▶ 반기별 납부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신청에 의해 반기별(6개월마다)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
- ▶ 신청요건 및 기간·방법

① 신청요건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② 신청 기간

종교단체는 반기별납부를 적용하고자 하는 전월에 신청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고 납부시기
2019년 6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2020년 1월 10일까지
2019년 12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2020년 7월 10일까지

③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전자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세무서식]에서 서식 내려 받기)

9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마다(매월 또는 반기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종교인 각각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 연말정산 시기

-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
예를 들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2020년 2월까지 연말정산함
- ▶ 종교인이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함

○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서류

▶ 종교단체가 제출할 서류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종교인이 제출할 서류

종교인은 연말정산을 위해 종교인소득 공제대상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종교단체에 제출해야 함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항목 ■

구 분	공 제 항 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세액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참고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소득세법 제145조의3)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 ■

①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②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③ 소득금액(① - ②)	
④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⑤ 연금보험료공제	
⑥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⑦ 소득공제등 종합한도초과액	
⑧ 과세표준(③-④-⑤-⑥+⑦)	
⑨ 기본세율	6~42%
⑩ 산출세액(⑧×⑨)	
⑪ 자녀세액공제	
⑫ 연금계좌 세액공제	
⑬ 기부금세액공제	
⑭ 표준세액공제	7만원
⑮ 외국납부세액공제	
⑯ 결정세액(⑩-⑪-⑫-⑬-⑭-⑮)	
⑰ 기납부세액	
⑱ 차감납부세액(⑯-⑰)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서식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다음연도 3.10.)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

▶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사업소득)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음에 유의

구 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관리하는 경우 제출대상 아님

○ 지급명세서 제출 시 혜택

▶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음

- '19년부터 지급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를 제출하고, 가구·소득·재산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금융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첨부 요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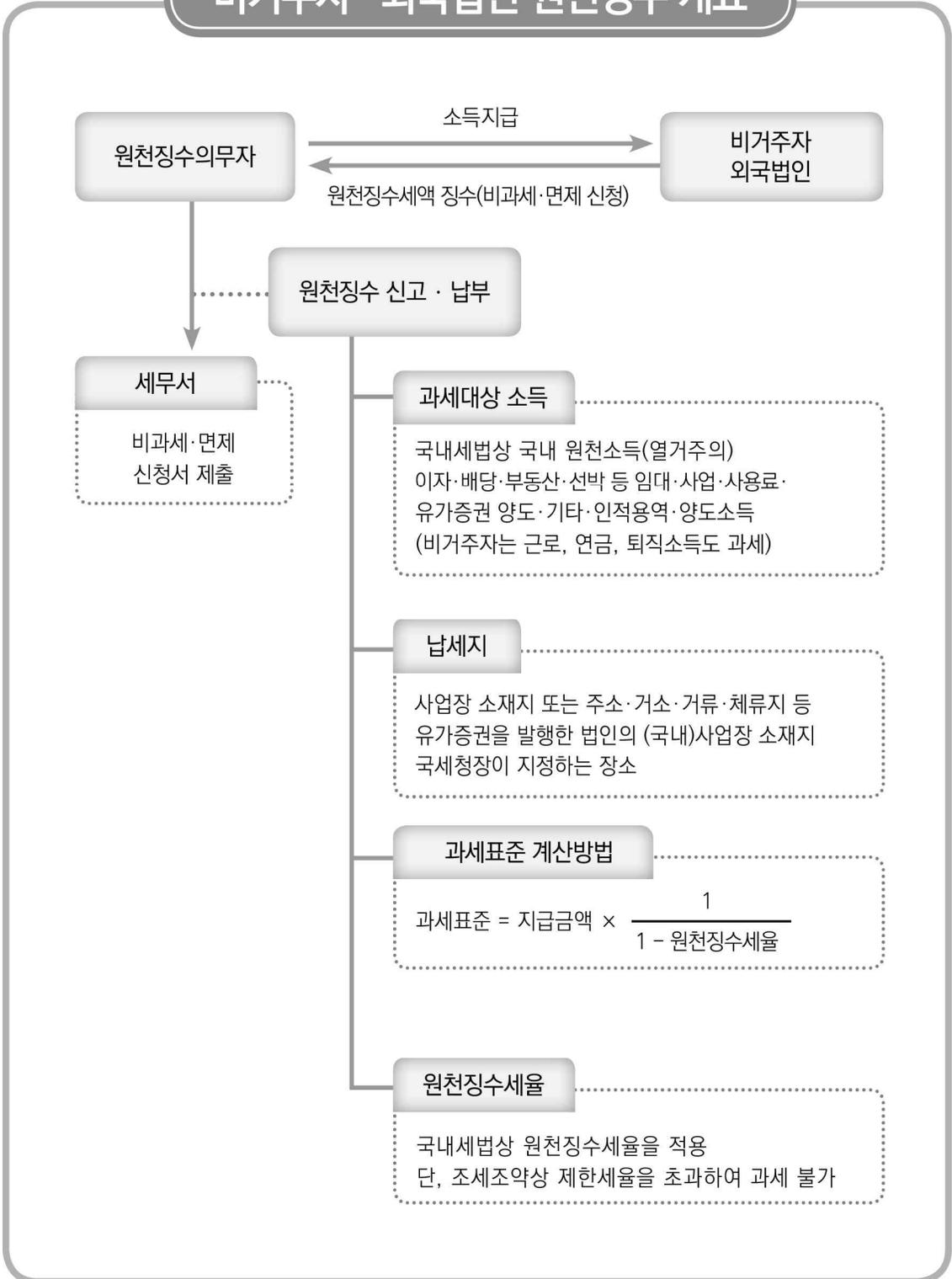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 시 불이익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다음연도 3.10.)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3개월이내 지연제출 시 0.5%) 가산세 부과

▶ 다만, 적용시기는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8.1.1.부터 2019.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비거주자 · 외국법인 원천징수 개요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1 비거주자

- 비거주자 개념
 -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기간의 계산
 -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함
- ▶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에 해당하여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거주자 판정 특례

-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봄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범위

구 분	거 주 자	비거주자
과세범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 과세대상소득

가.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 ▶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

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상)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원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 : 14)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10호	사용료소득			20
11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12호	기타소득			20
7호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금소득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가능)
3호	부동산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8호	퇴직소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5(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로 함
-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지급액의 10% 원천징수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양도소득 :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 신고납부
▶ 다만,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가능
(소득세법 제121조 5항)

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 : 14)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8호	사용료소득			20	
9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10호	기타소득			20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신고·납부 가능)	20(3)
7호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3호	부동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도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 함(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 제외)
-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신고·납부
 -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 가능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천징수의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4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납 세 지
거 주 자	①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② 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법 인	③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④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다만, 법인이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할 수 있음
비거주자의 원천징수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①~④까지의 규정에 정한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9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5 원천징수시기

-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
 - ▶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6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과세표준
 -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 ▶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

$$\text{과세표준} = \text{지급금액} \times \frac{1}{1 - \text{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모두 포함

-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 산출

$$\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 \text{제한세율} \times \frac{1}{1 + 0.1}$$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법인세)의 10%인 경우임

사 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제한세율 10%로 조세조약 체결, 지급자 세부담 조건,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text{과세표준} : 100,000 \times \frac{1}{1 - \text{원천징수세율}}$$

$$= 100,000 \times \frac{1}{(1 - 0.11)} = \frac{100,000}{0.89} = 112,359$$

* 원천징수세율 = 제한세율(0.1) + 지방소득세율(0.1 × 10%) = 0.11

원천징수세액 :	법 인 세	112,359 × 0.1 =	11,236
	지방소득세	11,235 × 0.1 =	1,123
	합 계		12,359

-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에스토니아, 이란, 콜롬비아, 인도

○ 유가증권 양도소득

-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함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 ② ①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5% 이상인 경우
- ▶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7

원천징수세율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 원천징수 세율

- ▶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
- ▶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 제한세율의 개념

-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 등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 제한세율 특징

- ▶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 ▶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
- ▶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세법상 세율로 과세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

-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 연금, 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 ①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 ②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세율을 적용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

○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 경정청구 관련 사항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 제한세율 적용 배제

-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 ▶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8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적용신청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 지급자에게 비과세 ·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제외)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 ▶ 『비과세 · 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 ▶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첨부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 ▶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 ·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 · 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 ▶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비과세 ·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득지급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
 - ▶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9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함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2019년 원천세 관련 개정세법

구 분	2018년	2019년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input type="checkbox"/>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율 인하 <input type="checkbox"/> 1일 0.03% → 1일 0.025%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input type="checkbox"/> 300만원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input type="checkbox"/>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input type="checkbox"/>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에게 받은 보상금 <추 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확대 <input type="checkbox"/> 300만원 →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연 500만원 대여소득 기타소득 분류 허용 및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규정	<input type="checkbox"/> 물품·장소의 대여료 소득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대여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 <추 가>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등 : 80% <input type="checkbox"/>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60% <추 가>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규모(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 <input type="checkbox"/> 일정금액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필요경비율 규정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 60%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input type="checkbox"/>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input type="checkbox"/>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input type="checkbox"/> 1일 1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인상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10만원 → 15만원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 특례 <input type="checkbox"/>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자(당해연도 또는 직전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자), 농어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	<input type="checkbox"/>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자(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년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자), 농어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

구 분	2018년	2019년
<p>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input type="radio"/> (공제한도) 300~1,800만원* * ①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차식) : 1,800만원 ②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차식) : 1,500만원 ③ 만기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④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차식) : 300만원 <input type="radio"/>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input type="radio"/>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p>	<p><input type="checkbox"/> 주택요건 완화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기준시가 5억원 이하</p>
<p>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p>	<p><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대상 <input type="radio"/> 6세 이상의 자녀</p>	<p><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input type="radio"/> 7세 이상의 자녀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p>
<p>기부금 세액공제 확대</p>	<p><input type="checkbox"/>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input type="radio"/> 2천만원 이하 : 15% <input type="radio"/> 2천만원 초과분 : 30%</p>	<p><input type="checkbox"/> 고액 기부 기준금액 인하 <input type="radio"/> 1천만원 이하 : 15% <input type="radio"/> 1천만원 초과분 : 30%</p>
<p>실명미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p>	<p><input type="checkbox"/> 실명미확인(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세율 <input type="radio"/>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 90% <input type="radio"/>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 40%</p>	<p><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율 인상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40% → 42%</p>
<p>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자 부담 완화</p>	<p><input type="checkbox"/> 비실명자산에 대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input type="radio"/>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가 기본세율(14%)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비실명자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 완화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기본세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되고 그 부족액을 납부</p>
<p>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p>	<p><input type="checkbox"/>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 25% * 금융회사가 아닌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으로서 P2P 투자 이자소득 포함 〈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좌 동) 단,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 : 14% * 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 (적용기한) '20.1.1.~'20.12.31.</p>
<p>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p>	<p><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input type="radio"/> 공제율 : 10%</p>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율 축소 <input type="radio"/> 공제율 : 10% → 5%</p>

구 분	2018년	2019년
<p>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p>	<p><input type="checkbox"/>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p> <p>○ (가산세)</p> <p>-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p> <p>○ 적용시기</p> <p>-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p>	<p><input type="checkbox"/> 가산세 적용시기 2년간 유예</p> <p>】 (좌 동)</p> <p>○ 적용시기</p> <p>-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p> <p>* 2018.1.1.부터 2019.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p>
<p>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p>	<p><input type="checkbox"/>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p> <p>○ 일반근로 : 100만원</p> <p>○ 원양어업, 항행 : 300만원</p> <p>○ 건설현장 : 300만원</p> <p>- 감리업무 포함</p> <p>- <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p> <p>】 (좌 동)</p> <p>- 설계업무 포함</p>
<p>생산직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p> <p>○ (소득요건)</p> <p>①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p> <p>*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p> <p>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p> <p>○ (대상직종)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p> <p>○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p>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확대</p> <p>○ (소득요건 완화)</p> <p>①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p> <p>② (좌 동)</p> <p>○ (대상직종 확대)</p> <p>(좌동)+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p> <p>○ (좌 동)</p>
<p>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p>	<p><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p> <p>○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p> <p>* 진찰·치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p> <p>○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p> <p><input type="checkbox"/>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p> <p>○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p> <p>○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p> <p>○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p>

구 분	2018년	2019년
<p>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p>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 〈추 가〉 ○ (감면율)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201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경우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 (좌 동)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 ○ (적용기한) 2021.12.31.
<p>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 50%, 중견기업 근로자 :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20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적용기한) 2021.12.31.
<p>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적용기간) 2018.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적용기한) 201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적용기한) 2021.12.31.

구 분	2018년	2019년								
<p>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정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 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요건)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세액 : 투자금액의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 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 35% 								
<p>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되는 연간 2천만원 제외 ○ (특례내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간 분할납부 ○ (적용기한) 201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 (적용기한) 2021.12.31. 								
<p>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사업(근로)소득금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td> <td>500만원</td> </tr> <tr> <td>4천만원~1억원</td> <td>300만원</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공제한도) 좌 동 ○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 - \frac{\text{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text{사업소득금액}^*})$ *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p>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적용 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대상 주택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좌 동) ○ (좌 동)
<p>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9~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 연간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 (의무가입기간) 2년 ○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 (가입기간 전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 : 연 600만원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가입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 ○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와 동일 ※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 신고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구분	2018년	2019년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input type="checkbox"/> (적금요건) 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회사가 국방부장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 ②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 <input type="checkbox"/> (납입한도) 월 4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간) 군복무기간(최대 24개월)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가입분 <input type="checkbox"/> (가입절차) 가입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격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 국방부, 병무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총급여액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총급여액</td> <td>공제한도</td> </tr> <tr> <td>7천만원 이하</td> <td>300만원</td> </tr> <tr> <td>7천만원~1.2억원 이하</td> <td>25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18.12.31.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등)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19.12.31.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민건강보험료,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구 분	2018년	2019년																
<p>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p>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도서·공연 매출분으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 도서(서점) : 3억원 -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 : 7,500만원 <input type="checkbox"/> 단, 서점의 경우 전체 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인 경우에 한함</p>																
<p>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p>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바탕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보완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에 누락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신청 허용(영수증 등 증명서류 첨부시)</p>																
<p>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차 신설</p>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절차 마련 <input type="checkbox"/>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또는 과세 이연을 신청한 경우 제외 <input type="checkbox"/> (제출시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p>																
<p>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명세서 제출시기 조정</p>	<p><input type="checkbox"/>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시기 <input type="checkbox"/> 비과세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p>	<p><input type="checkbox"/> 제출시기 조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 (연1회) *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의 경우와 제출시기를 일치</p>																
<p>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기간연장</p>	<p><input type="checkbox"/>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세율 및 적용기한 - 조합원·회원, 준조합원 동일</p> <table border="1" data-bbox="468 1597 811 1740"> <tr> <td>소득발생 기 간</td> <td>'18.12.31. 까지</td> <td>'19.1.1. ~12.31.</td> <td>'20.1.1. 부터</td> </tr> <tr> <td>감면내용</td> <td>비과세</td> <td>5% 분리과세</td> <td>9% 분리과세</td> </tr> </table>	소득발생 기 간	'18.12.31. 까지	'19.1.1. ~12.31.	'20.1.1. 부터	감면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table border="1" data-bbox="911 1597 1253 1740"> <tr> <td>소득발생 기 간</td> <td>'20.12.31. 까지</td> <td>'21.1.1. ~12.31.</td> <td>'22.1.1. 부터</td> </tr> <tr> <td>감면내용</td> <td>비과세</td> <td>5% 분리과세</td> <td>9% 분리과세</td> </tr> </table>	소득발생 기 간	'20.12.31. 까지	'21.1.1. ~12.31.	'22.1.1. 부터	감면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소득발생 기 간	'18.12.31. 까지	'19.1.1. ~12.31.	'20.1.1. 부터															
감면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소득발생 기 간	'20.12.31. 까지	'21.1.1. ~12.31.	'22.1.1. 부터															
감면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이 책자의 내용은 2019년 4월 기준의 세법내용 및 제도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 적용 시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원천세 신고안내

발행일자	2019년 4월		
발행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편집	원천세과장 지 성		
	서 기 관	김 용 재	행정사무관 서 승 희
	행정사무관	김 재 산	행정사무관 김 동 근
	행정사무관	박 동 철	국세조사관 노 영 인
	국세조사관	배 유 진	국세조사관 강 신 혁
	국세조사관	이 정 아	국세조사관 이 대 희
	국세조사관	김 태 형	국세조사관 김 정 열
	국세조사관	박 용 태	국세조사관 강 선 흥
	국세조사관	최 연 하	국세조사관 이 수 미
	국세조사관	송 지 원	국세조사관 최 영 우
	국세조사관	오 은 정	국세조사관 정 지 훈

